

고려 공민왕대 정부 주도 교역의 여건 및 특징

이강한

한국학중앙연구원 인문학부 조교수, 한국중세사 전공
sisko104@hotmail.com

- I. 머리말
- II. 공민왕대 대외교역의 제 여건
- III. 공민왕대 정부차원 대외교역의 양상
- IV. 맷음말

이 연구는 한국연구재단 2009년도 기초연구과제지원사업의 지원을 받아 작성되었음
(과제번호 KRF-2009-32A-A00013)

I. 머리말

13세기 후반, 고려의 국왕, 정부 및 민간상인들이 직면하던 대외교역 여건은 이전에 비해 대단히 악화된 것이었다. 이미 12세기 중반 이래 감소하고 있던 중국 강남상인들의 방문은 이 무렵 거의 중단된 상태였다. 또 원정부의 요구에 따라 다량의 공물이 중국으로 유출됨으로써 고려정부의 재정상태 역시 지극히 열악하였다. 고려-원 교역을 매개할 중국 측 상인들의 부재, 그리고 대중국 교역에 투입할 특산물의 강탈로 인해 한-중 간 교역은 최소한 13세기 후반에는 재개되지 못하였다. 정부와 민간을 막론하고, 원제국에 적극적으로 진출하거나 그와 영속적 교역관계를 구축할 엄두를 내지 못하는 상황이었다.¹⁾

그러다가 13세기 말 비로소 상황이 변하기 시작하였다. 충렬왕과 충선왕, 그리고 충숙왕과 충혜왕은 각기 다양한 방식으로 원파의 교역에 나섰다. 충렬왕의 경우 고려 내 鷹坊들을 銀 수집의 전진기지 삼아 이슬람권과의 교역에 나서려 하거나, 원 항구 등지에 관영교역선을 파견하는 등의 적극적 노력을 보였다. 그의 아들 충선왕은 중국, 회화상인들을 매혹할 고급 염직물 생산을 위해 방직, 염색 부서들의 통합에 나섰고, 충숙왕은 교역상인들을 측근 삼아 원 내지 고려인사회와의 교류를 도모하였다. 충혜왕의 경우 이슬람권과의 유대관계가 가장 강했던 국왕으로서, 원제국정부의 해상 禁飭을 피해 주로 육로를 경유하여 인삼 및 모시를 외국에 수출하였다.²⁾ 이러한 노력으로 인해 13세기 말-14세기 전반 정부차원의 고려-원 교역이 본격화되었고, 민간상인들의 적극적인 대원 진출도 계속되었다.

이 글에서 살펴보자 하는 것은, 고려정부 차원의 교역에서 위와 같은 양상이 과연 언제까지 전개되었느냐의 문제이다. 그리고 그러한 문제의 답은 이른바 ‘脫元’의 노력이 두드러졌던 공민왕대의 역사가

1) 이강한, 「13-14세기 고려-원 교역의 전개와 성격」, 서울대학교 문학박사학위논문 (2007).

2) 이강한, 「1270-80년대 고려 내 鷹坊 운영 및 대외무역」, 『한국사연구』 146(2009a); 「13세기 말 고려 대외무역선의 활동과 元代 ‘關稅’의 문제」, 『도서문화』 36(2010); 「고려 충선왕·元武宗의 재정운용 및 ‘정책공유’」, 『동방학지』 143(2008); 「고려 충숙왕의 田民辨定 및 상인동용」, 『역사와 현실』 72(2009b); 「고려 충혜왕대 무역정책의 내용 및 의미」, 『한국중세사연구』 27(2009c).

쥐고 있다. 게다가 주지하는 바와 같이 14세기 중·후반은 중국에서 이른바 원-명 교체가 진행되던 시기이다. 원제국정부가 남해교역 및 오르탁교역 등을 적극 장려하며 그것을 주요 세입원으로 활용했던 것과는 달리, 1368년 건국한 명정부는 정치·경제적 사유를 들어 강력한 해금정책을 시행하였다. 그러한 변화에 대응하여 고려정부 또한 어떤 형태로든 종전의 대외교역 정책기조를 수정하고자 했을 것으로 짐작된다.

그런데 명정부의 대표적인 해금조치로 일컬어지는 명주(영파), 천주, 광주 시박사의 폐지는 1374년에 이르러서야 단행되었고, 그전까지는 중국상인들이 각 항구를 통해 각기 日本, 琉球 및 占城, 暹羅 등지로 출항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³⁾ 아울러 이후에도(예컨대 1381년) 해상들을 대상으로 한 왕래금지 조치가 계속 요망될 정도로 중국상인들의 외국왕래가 계속되었다.⁴⁾ 중국상인들의 대외교역 양태가 최소한 1370년대 중반까지는 이전의 양상을 견지했던 것이다. 따라서 중국의 해금정책은 공민왕으로 하여금 교역정책을 조정케 할 변수가 되지 못했던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료들을 살펴보면, 공민왕대의 대중국 ‘官營’ 교역이 이전에 비해 극히 부진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공민왕이 이전 국왕들에 비해 대외교역을 기피하거나 그 효용을 불신했던 정황은 별도로 발견되지 않는바, 이러한 부진상은 공민왕의 문제의식에서 비롯된 것이라기보다 당시 공민왕대 대중국 교역여건의 특수성에서 비롯되었을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공민왕대 고려정부 차원의 대중국교역이 부진했던 이유를 설명하기 위해서는 당시 공민왕이 직면하고 있던 교역여건들이 이전과 ‘어떻게 달랐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⁵⁾

3) 『明史』卷75 志51 職官4, 市舶提舉司; 卷81 志57 食貨5 市舶.

4) ‘해금의 방침’은 홍무원년부터 표방되어 왔지만, 그것은 강남지역 한인군웅들의 잔류세력이 준동하는 것을 단속하기 위한 정치적·군사적 해금이었을 뿐, 대외교역상인들의 활동은 적어도 1374년까지는 행정적으로 보장되었다. 檀上寬, 「明初の海禁と朝貢－明朝專制支配の理解に寄せて」, 森正夫 等著, 『明清時代史の基本問題』(汲古書元, 1997).

5) 물론 공민왕대의 대외교역이 부진했던 가장 일차적인 원인으로는 ‘외적의 침입’을 들 수 있을 것이다. “서쪽으로는 紅賊을 우려하고, 동쪽에서는 契奴가 근심거리가 되어, 沿邊의 백성들이 寧居를 얻지 못하고 있다”(『高麗史』卷39 世家39 恭愍王 7年/1358 3月 甲子)는 공민왕의 언급에서, 당시 홍건적과 왜구의 문제가 고려국왕 및 정부의 대외교역 추진을 대단히 어렵게 하고 있었을 가능성을 엿볼 수 있다(왜구는 1380년대 중반 이후나 줄기 시작하였다(김보한, 「中世 麗·日 관계와 契寇의 발생 원인」, 『왜구·위사 문제와 한일관계』 한일관계사연구논집 4, 경인문화사, 2005). 정부의 교역정책도 결국은 상인들을 고용하고 연해민들을 동원하는 형태로 이루어지기 마련이었는

이 글에서는 우선, 고려의 관영(국왕, 정부) 대외교역을 매개했을 ‘해외 상인들의 한반도 왕래’의 측면에서 공민왕대의 상황이 이전과 어떻게 달랐는지를 살피고(II장 1절), 고려국왕의 대외교역에 필요했을 ‘교역물자 및 결제수단’의 측면에서 공민왕대의 상황이 이전과 달랐던 점 또한 살펴보고자 한다(2절). 전자의 경우 공민왕대의 대외교역에 우호적인 변수로 작동할 소지가 있었다면 후자는 반대로 지장을 초래할 만한 악재였다고 하겠는데, 이전의 국왕들은 경험치 못한 이 변수들이 어떤 과정을 거쳐 공민왕대에 등장했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아울러 이 변수들이 공민왕대 대외교역의 어떠한 특징으로 귀결되었는지를 공민왕대 강남지방과의 교류, 요동지역과의 교류, 河南王(및 기황후) 세력과의 교류, 그리고 명과의 교류 등을 통해 살피고자 한다. 우선 공민왕의 대표적인 교류 대상으로 알려져온 강절행성 및 요양행성 관련자들의 경우 그들에 대한 공민왕의 입장이 다분히 소극적이었음을 살펴보고(III장 1절), 공민왕이 당시 원의 권력자로서 황태자, 기황후 세력의 일원이었던 擴廓帖木兒(코코테무르)와 적극 통교하고 그를 통해 大都의 고려인 사회와 접촉하고자 했으나 원-명 교체의 와중에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한 것 또한 검토하고자 한다(2절). 그를 통해 공민왕대의 대중국 교역이, 중국의 강남 연안 또는 한반도 북변의 요동지역보다는 제국 중심부로서의 대도 쪽과의 교류에 초점을 맞춘 것이었으며, 그 점에서 14세기 전반 충선왕, 충숙왕의 원내 교역활동을 연상시키는 것이었음을 확인하고자 한다.

데, 즉위 초부터 왜구가 들끓기 시작해 공민왕 재위 20여 년간 지속되고 도중에 홍건적의 침공까지 겹쳤던 당시의 상황은, 그러한 시도 자체를 불가능하게 만든 측면을 지녔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이 부분을 공민왕대 대외교역의 규모와 양태를 규정한 대표적 변수로 간주할 수 있다. 다만 이 글에서는 그러한 경제 ‘외적’ 변수들 대신 경제적 맥락의 변수들만을 살펴보고자 한다.

II. 공민왕대 대외교역의 제 여건

1. 우호적 변수: 외국(상)인들의 고려 방문 재개⁶⁾

1) 강남지역 행성 및 한인군웅의 한반도 접촉

주지하는 바와 같이, 이전에 “宋商”으로 지칭되던 ‘중국 강남지역 상인’들의 한반도 방문은 12세기 전반을 계기로 급격히 감소했으며, 13세기 후반에 들어와서는 거의 끊기다시피 하였다. 13세기 말~14세기 초 일부 이례적인 사례들을 제외하고는 강남상인들이 한반도를 교역차 방문한 정황을 확인하기 어려우며, 이러한 상황은 적어도 반세기 동안 유지된다. 오히려 강남상인들보다는 이른바 ‘동~서 세계 간’ 실크로드 무역에 종사하던 몽골, 회화상인들이나 이슬람, 인도지역의 정치세력들이 고려를 방문하여 자신들의 교역활동에 한반도를 어떤 형태로든 끌어들여 했음이 주목된다.⁷⁾ 당시 강남지역인들 역시 그러한 추세에 편승해 한반도를 과상적으로나마 방문했을 가능성은 없지는 않지만, 자료상으로는 그것이 확인되지 않는다.⁸⁾

그러다가 그러한 상황에 변동이 발생하기 시작한 것이 1350년대 후반으로, 이른바 ‘강남의 한인군웅’ 세력들이 고려정부에 접촉해왔음이 주목된다. 1350년대 접어들어 원제국정부의 강남지역에 대한 통제가 이완되면서, 강남지역에서는 일련의 ‘한인군웅’들이 특세하여 원조정을 괴롭히며 서로 각축을 벌이고 있었다. 그리고 이러한 세력들이 앞다투어 고려에 접촉해왔음을 14세기 중반의 고려 측 사료들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6) 그간 ‘중단’되었음이 확실한 것은 육로 방문보다는 해로 방문이었던바, 이 절에서는 육로로 한반도를 방문하던 ‘요동인’들 대신, 해로로 한반도를 방문하던 ‘강남인’들을 주로 살펴보도록 한다.

7) 이강한, 「1270년대~1330년대 외국인들의 고려 방문: 13~14세기 동~서 교역에서의 한반도의 새로운 위상」, 『한국중세사연구』 30(2011).

8) 물론 당시 천주지역을 중심으로 활동하던 서역, 회화상인들이 천주의 강남상인들과 계속 접촉하였을 것이고, 당시 중국 강남지역에서 활동하던 고려인들이 강남 항구지역의 각국 상인들과 교류하는 와중에 한인들과도 지속적으로 교류했을 것이므로, 천주, 경원 등지에서 활동하는 강남 한인 상인들의 ‘간접적’ 고려 왕래는(다른 상인들을 경유한 교역을 이름) 14세기 전반에도 계속되었을 것이다. 그러나 강남상인들이 재화와 공력을 들여 고려를 ‘직접’ 방문하는 형태의 교류만큼은, 고려 측 사료에서 확인되는 시기별 강남지역인들의 방문 양상 및 당시 강남지역인들의 인도 및 이란 투자가 급증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이전에 비해 대단히 감소한 것으로 판단된다.

그중 일정한 규모의 물자를 고려 측에 제공하고, 또 답신을 받아가는 등 물자교역에 해당하는 행적을 보였던 대표적인 사례로 張士誠과 方國珍을 들 수 있다.

종래의 경우 원정부에 반기를 들고 강남지역에서 봉기한 일부 군웅세력들이 ‘정치적’ 이유로 고려를 찾은 것이라 보아왔다. 그러나 중국 강남과 고려 사이에는 커다란 해상 격렬이 존재했고, 그 때문에 고려와의 ‘동맹’ 관계라는 것도 외교적 수사 이상의 것이기 어려웠다. 따라서 강남 한인군웅들의 고려 방문을 순수히 정치적 동기에서 비롯된 것이라 보기에는 어려운 측면이 있다. 오히려 그들의 방문을 가능케 했던 경제적 ‘장치’들을 찾아낼 필요가 있다.

그와 관련하여 장사성, 방국진 등이 고려에 접촉해오기 전, 이미 강절행성의 최고위층에서 고려정부에 접촉을 해온 바 있었음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장사성이나 방국진의 고려 접촉 역시 그들이 원조정으로부터 그 실체를 인정받고, 강절행성이라는 지방행정단위의 관직을 받은 연후에 이루어졌음을 유의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정황들은, 당시 (1) ‘중국 강남지역인들의 고려 방문’이 (2) ‘강남지역 한인군웅들의 고려 접촉’과 동시기에 진행되고는 있었지만, 전자가 후자로 인해 가능해졌던 것이라기보다는, 오히려 그 반대, 즉 후자적 현상이 전자의 일환으로 전개되었을 가능성성을 시사한다.

장사성의 경우, 일반적으로는 1357년 7월 처음 공민왕에게 사신을 보냈던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이는 “‘강절성 승상’이 (강절성의 관원인) 理問 實刺不花를 보내와 토산물을 바쳤다”는 『고려사』 1357년 7월조 기사를 근거로 한 관측이었다.⁹⁾ 그런데 당시 강절행성의 승상은 사실 장사성이 아니었다. 당시 강절행성의 좌승상으로 達識帖睦邇라는 인물이 확인된다.¹⁰⁾ 장사성은 위 ‘1357년 7월의 방문’이 있은 지 한 달 이후인 1357년 8월, 원 정부군에게 항복하고는 강절행성의 ‘太尉’ 직을 받았을 때름이었다.¹¹⁾ 즉, 1357년 7월 고려에 도착한 강절행성의 관료는 장사성이 파견한 것이 아니라 달식첩목이가 파견한 것이 된다.¹²⁾

9) 『高麗史』 卷39 世家39 恭愍王 6年(1357) 7月 乙亥。

10) 『元史』 卷97 志46 食貨5 海運 (至正) 19年, 時達識帖睦邇爲江浙行中書省丞相, 張士誠爲太尉, 方國珍爲平章政事, 詔命士誠輸粟, 國珍具舟, 達識帖睦邇總督之。

11) 『元史』 卷45 本紀45 順帝 至正 17年(1357) 8月。

12) 김혜원의 경우, 1357년 7월 당시 ‘강절성 승상’에 의해 고려에 파견된 實刺不花가 1358

이 달식첩목이라는 인물은 어떤 인물이었을까. 그는 여러 차례 문한직을 제수받았고, 1349년 3월 호광행성 평장정사가 되었다.¹³⁾ 1351년 3월 대사농으로서 강절행성 관원들과 함께 방국진을 초유하였고, 1354년 6월에는 장사성을 토벌하다가 대패하기도 하였다.¹⁴⁾ 1355년 2월 대도로 돌아와 중서평장정사가 되었다가 1355년 8월 비로소 강절행성 좌승상이 되었고, 1356년 3월 지행추밀원사를 겸하게 됐지만 4개월 뒤인 7월 다시금 장사성에게 대패하였으며¹⁵⁾, 결국 그다음 해인 1357년 8월 장사성이 강절행성의 태위로 오게 된다.

이즈음 그의 동향에서는 두 가지 면모가 확인된다. 그는 우선 장사성의 항복을 믿지 않았으며, 그것이 장사성의 势 확대를 위한 ‘거짓 항복’이라 의심하였다. 즉, 그는 한인군웅을 견제하는 몽골인 지방관으로서, 원제국 중앙정부의 방침에 충실했던 인물로 느껴진다. 게다가 그는 1359년 원조정이 장사성의 아우 장사신을 강절행성 평장정사에 임명할 당시 모든 권한을 빼앗겼다고 되어 있어¹⁶⁾, 군웅으로서의 장씨세력과는 철저히 대척지점에 서 있던 인물이라 할 수 있다. 그런데 또 다른 기사에 따르면, 장사성을 강절행성의 관료체계 내로 불러들인 것이 달식첩목이 이기도 했음이 주목된다. 『명사』의 張士誠傳에 따르면, 달식첩목이가

년 7월 장사성에 의해 다시금 고려에 파견되었음을 들어, 1357년 7월의 ‘강절성 승상’ 역시 장사성이었을 것이라 추정한 바 있다(김혜원, 「高麗 恭愍王代 對外政策과 漢人群雄」, 『백산학보』 51, 1998). 그러나 전술한 바와 같이 1357년 당시의 강절성 승상은 ‘달식첩목이’였고 장사성은 이후 승상이 아닌 ‘태위’의 직을 수여받았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으며, (1357년 7월 방문과 관련해서는 사실관계만 기술된 것과는 달리) 1358년 7월의 방문 기사에는 장사성과 공민왕이 첫 인사를 나누는 듯한 정황이 묘사되어 있음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高麗史』 卷39 世家39 恭愍王 7年/1358 7月 甲辰, “…… 稔聞國王有道, 提封之內民樂其生, 殊慰懷想.”). 따라서 장사성이 공민왕에게 최초로 사신을 파견한 것은 ‘1357년 7월’이 아닌 ‘1358년 7월’로 보는 것이 적절한 것으로 생각되며, 실랄불화는 강절행성의 이문 관료로서 지도부의 변화와 무관하게, 1357-1358년 연속으로 고려에 파견된 것이었다고 할 것이다.

13) 『元史』 卷40 本紀40 順帝(後)至元 6年(1340) 3月 丁丑(규장각대학사); 卷41 本紀41 順帝 至正 4年(1344) 9月 癸丑(提調宣文閣 知經筵事), 至正 5年(1345) 9月 辛丑(翰林學士承旨); 卷42 本紀42 順帝 至正 9年(1349) 3月 己巳.

14) 『元史』 卷42 本紀42 順帝 至正 11年(1351) 7月; 卷43 本紀43 順帝 至正 14年(1354) 6月 辛卯.

15) 『元史』 卷44 本紀44 順帝 至正 15年(1355) 2月 丙子; 8月 戊辰; 至正 16年(1356) 3月 丁酉; 7月 丁酉.

16) 『元史』 卷140 列傳27 達識帖睦邇 普化帖木兒, 達識帖睦邇不可, 曰: “我昔在淮南, 嘗招安士誠, 知其反覆, 其降不可信…… (至正) 19年(1359), 朝廷因授士信江浙行省平章政事 [...] 方面之權, 悉歸張氏, 達識帖睦邇徒存虛名而已.”

당시 강절행성의 또 다른 실력자였던 完者와 사이가 나빠 장사성의 병력을 불러들였고, 장사성은 그에 대한 보답으로 완자를 죽였다는 것이다.¹⁷⁾ 이 두 사료에 드러난 그의 면모들을 종합해보면, 달식첩목이 원정부가 임명 파견한 지방의 최고위 관원이었으되, 별도의 의도를 갖고 독자적인 행동도 서슴지 않았던 인물로 여겨진다.

즉, 달식첩목이는 당시 강남지방 최대 행성인 강절행성의 몽골인 지방관으로서 강남지역에서 준동하던 한인군웅들을 견제해야 할 책무를 지닌 존재였던 동시에, 자신의 사익 운영차원에서 필요할 경우 강남의 한인세력들과 긴밀한 관계를 유지할 동기 또한 지닌 존재였던 것이라 판단해볼 수 있다. 그럴 경우 그가 고려에 접촉을 해온 것도 전혀 이상한 일이 아니게 된다. 그가 일찍이 강남행대 어사대부로 재직하던 시절 자신과 사이가 안 좋던 강절행성의 관료를 탄핵하기 위해 呂思誠이라는 관원을 부당하게 동원하려 했다가 ‘나를 당신의 鷹犬으로 생각하지 말라’는 준열한 비판을 들었음에서 그가 도의나 명분을 중시하는 사람은 아니었을 가능성을 엿볼 수 있고¹⁸⁾, 그가 강절행성 좌승상으로 부임할 당시 황제로부터 원보초(지폐) 1천 錠을 하사받았음에서 그가 상당한 규모의 대외교역에 개입할 재력 또한 지녔음을 엿볼 수 있다.¹⁹⁾ 그의 이러한 면모는 그가 강남군웅들과 무관하게, 그 스스로 강절행성의 실력자로서 외부의 여러 국가와 교류했을 가능성을 상정케 한다.

17) 『明史』卷123 列傳11 張士誠 莫天祐, 達識帖睦邇在杭, 與楊完者有隙, 陰召士誠兵. 士誠遣史文炳襲殺完者, 遂有杭州.

18) 『元史』卷185 列傳72 呂思誠.

19) 달식첩목이가 저폐를 하사받은 1355년 8월보다 두 달 앞선 6월 원정부가 ‘至元折中統鈔’ 150만 정으로 미곡 150만 석을 매입했다는 기사(『元史』卷44 本紀44 順帝 至正15年/1355 6月 庚辰), 당시 親王과 諸王의 사망에 하사하는 부조가 대체로 200~500정 규모였음을 보여주는 기사(卷44 本紀44 順帝 至正15年/1355 1月 甲子; 4月 辛巳; 6月 乙亥), 황후 모친의 사망에 하사된 부의금이 300정 규모임을 보여주는 기사(卷43 本紀43 順帝 至正14年/1354 9月 丁卯), 말 한 필 가격이 5~6정 정도였음을 보여주는 기사 등을 고려할 때(卷43 本紀43 順帝 至正14年/1354 3月 丙子), 1350년대 1천 정의 가치 규모가 결코 작은 것은 아니었음을 엿볼 수 있다. 아울러 제왕 책봉 때 축하로 1천 정을 하사하는 사례, ‘一字’ 왕호를 지닌 자에게 1천 정을 하사하는 사례 등을 고려할 때(卷43 本紀43 順帝 至正13年/1353 12月 己亥; 至正14年/1354 1月 壬申), 달식첩목이의 위상 또한 엿볼 수 있는 바가 있다. 따라서 달식첩목이가 하사받은 1천 정이 그의 경제행위에 투입되었을 가능성과 그러한 경제행위가 교역적 맥락을 떠 있었을 가능성을 상정할 수 있다. 시기적으로 좀 앞서는 기사이긴 하지만, 정부차원의 대서역교역에서 7만 정 규모의 투자가 확인되는바, 개인차원의 투자로 1천 정은 적절한 수준의 투자액으로 비치기도 한다(卷35 本紀35 文宗 至順2年/1331 2月 甲寅).

강남지방 행성의 최고위 권력자로서의 승상, 또는 고위 실무 관료들이 원제국의 외관 자격으로 고려 국왕에게 접촉을 시도했음이 시사하는 바는 크다. 당시 고려와 중국 강남지역 간의 교류가 고려정부와 할거군옹 사이의 비공식적·음성적 교류에 불과한 것이 아니었으며, 어느 정도의 외교적 공신성 및 행정적 맥락을 지닌 것이었을 가능성을 보여주기 때문이다.

장사성이나 방국진 등이 강절행성 또는 회남행성의 성관직 등을 제수 받아 공적인 권력을 행사할 수 있게 된 이후에나 고려와 통교하였음에서 그 점이 잘 확인된다. 장사성의 경우 1353년 5월 泰州, 興化縣을 격파한 후 高郵를 함락시켰고, 1356년 2월에는 平江路, 湖州, 松江, 常州 등을 함락시켰으며, 7월에는 드디어 항주를 함락시켰다.²⁰⁾ 그러나 그는 전술한 바와 같이 강절행성 태위가 된 다음 해인 1358년에나 공민왕에게 처음으로 사자를 보냈다. 방국진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태주에 거점을 둔 그는 1348년 처음으로 ‘해상’에서 난을 일으켰고, 이후 온주 등지를 공격했으며, 강절행성의 누차의 토벌 시도에도 불구하고 세력을 유지하였다.²¹⁾ 1353년 1월 잠시 항복했고 그 대가로 그해 10월 그를 포함한 그의 형제(方國璋, 方國瑛)들이 徽州路 治中, 廣德路 治中, 信州路 治中 등을 제안받았지만 거부했으며, 1354년 4월에도 1,300여 척의 배를 가지고 해도에 거하면서 해운을 막고 있었다.²²⁾ 그러다가 1356년 3월 다시금 항복, 海道運糧漕運萬戶와 防禦海道運糧萬戶를 겸하고 1357년 8월 강절행성 참지정사가 되었으며 1358년 5월에는 강절행성 좌승이 되었는데²³⁾, 바로 그 시점에 고려 공민왕에게 최초의 사신을 보내게 된다(이후 1359년 8월에도 고려에 사신을 보냄²⁴⁾). 방국진 역시 강절행성의 고위직을 역임하게 된 이후에나 고려와의 접촉을 꾀했던 것이며²⁵⁾, 이후 그가 고려와의

20) 『元史』卷43 本紀43 順帝 至正 13年(1353) 5月 乙未; 卷44 本紀44 順帝 至正 16年(1356) 2月 己卯; 7月 丁酉。

21) 『元史』卷41 本紀41 順帝 至正 8年(1348) 是歲; 卷42 本紀42 順帝 至正 10年(1350) 12月 己酉; 至正 12年(1352) 閏3月 辛丑; 5月 戊寅。

22) 『元史』卷43 本紀43 順帝 至正 13年(1353) 1月 丙子; 10月 庚戌; 至正 14年(1354) 4月 癸巳。

23) 『元史』卷44 本紀44 順帝 至正 16年(1356) 3月 戊申; 卷45 本紀45 順帝 至正 17年(1357) 8月 乙丑; 至正 18年(1358) 5月 戊戌。

24) 『高麗史』卷39 世家39 恭愍王 7年(1358) 5月 更子; 8年(1359) 8月 戊辰。

25) 방국진은 1년 뒤인 1359년 10월 강절행성 평장정사가 되었고(『元史』卷45 本紀45 順帝 至正 19年/1359 10月 庚申) 1366년 9월에는 드디어 강절행성 좌승상이 되었다(卷

접촉을 재개한 1364년 6월이나 1365년 8월, 10월 역시 그가 회남행성 좌승상이 된 1365년 9월을 전후한 시점이었음이 주목된다.²⁶⁾ 장사성과 방국진 모두, 행정권력을 장악해 가는 와중에 고려와의 통교 또한 적극 추진했던 것이다.

이들이 굳이 강남지역의 행정권력을 장악한 후 고려와 접촉한 이유는 무엇이었을까? 『원사』 식화지 해운조에서도 보이듯이, 장사성과 방국진은 당시 강남군웅들 중에서도 대표적인 해상세력이었다. 그런 점에서 당시 고려와 접촉을 시도할 만한 유일한 세력들이기도 하였다. 그러나 외국과의 통교는 일회적인 항해, 일회적인 거래로 끝나는 것이 아니었으며, 일정 기간 지속되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것이었다. 따라서 좀 더 영속적인 경제기반과, 그 경제기반을 통제할 정치적 권위가 수반되어야 했다. 그들이 외국과의 통교를 지속적이고도 원활하게 유지하기 위해서는 해상교역 상인들의 꾸준한 협조가 절실했고²⁷⁾, 항구지역을 군사적으로 지배하는 수준을 넘어 그것을 행정적으로 장악하는 것이 필요했던 것이다. 그들에게 그것을 제공할 수 있었던 것이 바로 강절행성 등 지역 지배단위들의 행정권력이었다. 그러한 행정권력을 통할 때 그들은 자신들의 군사력만으로는 접근하기 어려웠던 항구지역의 시박행정 인프라 및 내륙 각지의 세원들을 장악할 수 있었던 것이다.

앞서 언급된 장사성의 경우, 강남지역의 행정권력에 접근하기 전 지배하고 있던 지역이 강절행성의 북부지역, 즉 항주 이북지역에 불과하였다. 1357년 8월 강절행성 태위가 될 무렵 점하고 있던 범위의 최하한이 항주지역이었던 것이다.²⁸⁾ 세력권의 범위로만 놓고 보자면 그는 아직 경원지역에도 제대로 세력을 떨치지 못하고 있던 셈이다. 즉, 강절행성의 행정권력에 접근하지 않고서는 주요 항구들의 자유로운 이용이 여의치

47 本紀47 順帝 至正26年/1366 9月 丙戌(그의 동생 國瑛, 國珉, 조카 明善 등은 平章政事).

26) 『元史』 卷46 本紀46 順帝 至正 25年(1365) 9月 壬午.

27) 장사성의 회하에 있었던 대부호 沈萬三처럼, 원제국 말엽 혼란의 와중에 소주, 경원 등 항구지역의 많은 부호들이 군웅들에게 몸을 의탁하고 해외교역을 통해 많은 재물을 축적하였다(檀上寬, 앞의 논문에서 제인용). 강남군웅들은 이러한 부호들의 지원이 절실했을 것인데, 원말 명초 지방 유력 향신층의 밀무역 실태에 대해서는『崇禎漳州府志』나『崇禎海澄縣志』 등을 검토한 佐藤圭四郎의 「嘉靖萬曆年間の南海交通」,『イスラーム商業史の研究』(同朋社, 1981) 참조.

28) 『元史』 卷44 本紀44 順帝 至正 16年(1356) 2月(平江路, 湖州, 松江, 常州); 7月(張士誠遣兵陷杭州).

못한 상황이었다고 할 수 있다. 그에 비해 방국진은 1359년 3월 태주, 온주, 경원항 등 주요 항구지역들을 보유하고 있었음이 확인된다.²⁹⁾ 따라서 장사성에 비해서 외국들과의 교역에 나서는 것이 상대적으로 용이했을 수도 있다. 그런데 한편으로, 방국진의 경우 지역 상인들과의 관계는 그리 우호적이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江南行臺 御史大夫 納麟이 일찍이 台州를 거점으로 발호한 방국진을 공격하면서, 같은 태주의 民 陳子由, 楊恕卿, 趙士正, 戴甲을 비롯, 여러 ‘民丁’들을 동원했다는 기사에서 그를 엿볼 수 있다.³⁰⁾

즉, 장사성과 방국진 모두 지역적·세력적으로 상당한 영향력과 기반을 구축한 상태이긴 했으나, 외국과의 교역에 본격적으로 나서기에는 각자만의 고유한 취약점들이 있었던 셈이라 할 수 있다. 그런 상황에서 장사성의 경우 1357년 여름 강절행성 태위가 되고, 방국진의 경우 1358년 여름 강절행성 좌승이 된 이후에나 처음으로 고려와 통교를 시도한 것이다[1358년 5월(방국진)과 7월(장사성)에]. 장사성과 방국진이 강절성 행의 성관이 된 후, 강절행성 최고위층(예컨대 달식첩목이 등)에 의해 1357년 또는 그 이전부터 구축되어 있던 해외 제 지역들과의 통교 창구를 이용하여, 고려와의 통교에도 나설 수 있게 된 것으로 보는 것이 적절하지 않을까 한다. 그리고 그들의 고려 접촉이 시작되면서, 강절행성의 여타 성관들도 고려와 더욱 빈번히 접촉하게 된다. 장사성과 함께 고려에 사신을 보내온 했던 정문빈 역시 강절행성 관할의 강절해도 방어만호였고, 1359년 7월 漂風으로 黃州 鐵和江에 來泊했던 火尼赤 역시 강절성 평장이었다.³¹⁾ 강절행성의 태위(장사성), 평장(화니적), 좌승(방국진) 및 방어만호(정문빈) 등이 모두 전방위적인 한반도 접촉을 선보였던 것이라 할 수 있다.³²⁾

29) 『明史』卷1 本紀1 太祖 朱元璋, (至正) 19年 3月 丁巳(方國珍以溫, 台, 慶元來獻); 『元史』卷47 本紀47 順帝 至正 27年(1367) 9月 辛丑(時台州, 溫州, 慶元三路皆方國珍 所據).

30) 『元史』卷42 本紀42 順帝 至正 12年(1352) 5月 戊寅.

31) 『高麗史』卷39 世家39 恭愍王 8年(1359) 7月 甲寅; 8月 丁卯.

32) 유사한 사례로 회남지역의 고려 접촉 시도 또한 거론할 수 있다. 1361년 3월 淮南省 右丞 王晟이 고려에 緜帛, 沈香을 바친 바 있다(『高麗史』卷39 世家39 恭愍王 10年/1361 3月 丁巳). 회남행성은 1350년대 중반만 하더라도 장사성 등을 토별하는 주체로서 군웅들과 대척적 관계에 있던 지역이지만『元史』卷44 本紀44 順帝 至正 15年/1355 5月, 淮南行省 平章政事 咬住, 淮東廉訪使 王也先迭兒에게 高郵(의 장사성)를 撫諭케 함, 1357년 8월 장사성이 강절행성 태위가 되었을 당시 그 아우 장사덕이 회남행성 평장정사가 됨으로써(卷45 本紀45 順帝 至正 17年/1357 8月), 이 지역도 결국 장씨세력

이상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강남지역 한인군웅들의 고려 통교로 인해 강남지역인들의 한반도 방문이 재개된 것이라기보다는, 강남지역 강절행성 등 지역 지배단위들이 이미 고려와 접촉하고 있었던 결과, 당시 강절행성 이북지역에서 활동하던 군웅들의 고려 접촉이 원활히 전개될 수 있었던 것이라 하겠다. 장사성, 방국진 등의 행적이 그를 잘 보여준다고 하겠다.

2) 강남 한인상인들의 한반도 방문 재개

한편 행정권력화한 강남군웅들의 고려 방문이 전개되는 한편으로, 민간상인들의 동향은 어떠했을까? 당시 원정부의 해상 금칙이 이완되고 있던 추세를 고려한다면³³⁾, 민간상인들의 해외 방문 및 고려 접촉 또한 충분히 상정할 수 있다고 생각된다.

예컨대 장사성과 함께 고려에 예물을 보내왔던 강절해도 방어만호 정문빈이, ‘만약 상인들이 왕래하여 판매를 통하여 한다면 백성들에게 좋은 일일 것(‘儻商賈往來以通興販亦惠民之一事也’)’이라 언급한 바 있음이 주목된다. 비록 문장이 일종의 가정형으로 되어 있긴 하나, 이는 강절행성 등과 고려의 접촉이 일상화될 경우 민간상인들의 왕래도 더욱 활발해질 것임을 가정한 것으로 추측된다. 이전에 민간상인들의 왕래가 없었음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해서는 안 될 것이라 생각된다.

그와 관련하여 당시 강남지역 상인들이 실제로 고려를 방문하고 있었음을, 천주상인 孫天富·陳寶生의 고려 방문 사례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이들은 해외교역에 종사하며 고려에도 왕래한 것으로 전해지는데³⁴⁾, 그들의 정확한 고려 방문 시점은 미상이지만, 이 사실을 기록한 王彝가

의 영향력 아래로 들어가게 된다. 즉, 1360년대 초 희남지역의 고려 통교는 장씨일가가 희남행성의 성관직을 떠게 되어 이 지역에 대한 공적 지배력을 확보한 이후에 개시된 것이었으며, 그 점에서 군웅들이 강남 지방단위의 공식 적함을 떤 후 고려와 통교를 시도한 또 다른 사례라 할 것이다(장사신은 1364년 왕성을 시켜 강절행성 평장정사의 자리를 차지하기도 하였다(卷 140 列傳27 達識帖睦邇 普化帖木兒)).

33) 시박행정과 관련한 원조정의 대표적인 ‘禁飭’ 반포 사례로는 1293년의 市舶抽分雜禁 23개 조와 이후 시의를 반영해 그 내용을 개정한 1314년의 금칙, 그리고 1332년 반행된 11개 조의 금칙 등을 들 수 있다(이강한, 앞의 논문, 2009c). 그러나 이후 1340년대 초에 이르기까지 별다른 추가 금칙 반포가 관찰되지 않아, 원정부의 해외교역 통제력이 상당히 약화되어 있었음을 엿볼 수 있다.

34) 王彝 「泉州兩義士傳」(장동악, 『高麗後期外交史研究』, 일조각, 1994, 147쪽에서 재인용한 기사임).

1358년 10월 원측 사료에 등장함을 고려할 때³⁵⁾, 이 기록은 천주상인들이 14세기 중·후반 고려에 왔음을 보여주는 증거로 간주될 수 있다.

당시 고려를 방문하던 강남군웅 장사성 및 방국진 등이 주로 강절행성 이북에 몰려 있었던 반면, 그들과는 상대적으로 무관했던 남부 천주지역 상인들이 고려를 방문했음이 시사하는 바는 실로 크다고 할 수 있다. 일찍이 송나라 상인들이 활발하게 고려를 방문하던 11세기 당시에도, ‘천주’ 출신의 상인이 고려를 방문한 것은 송상들의 고려 방문이 시작된 이후 겨우 반세기 정도의 기간에 불과하였기 때문이다. 이후의 방문상인들은 주지하듯이 대부분 태주 또는 명주(경원, 오늘날의 영파) 출신으로 확인된다. 11세기 중엽을 기점으로 고려를 방문하던 송상들의 출신지가 천주에서 명주로 전환되면서, 천주 출신 상인들의 한반도 방문이 현저히 줄었던 것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정황은 천주지역은 인도, 이슬람권을 상대하던 해외교역 상인들이 주로 출입하는 국제교역항으로, 그리고 명주(경원)지역은 고려, 일본 등지를 상대하던 상인들이 주로 출입하는 동아시아 국지항으로 그 역할을 분담한 정황과도 무관치 않았다. 고려는 원거리 국제교역 상인들이 즐겨 방문하던 ‘필수 거래상대방’으로 간주되지 못하고, 단거리 국지교역에 종사하는 상인들이 찾던 지역항으로 그 위상이 조정된 셈이었다. 11-12세기의 방문 송상들이 대부분 명주(경원)지역 출신이었다는 사실이야말로, 당시의 ‘동아시아교역권’ 및 이른바 ‘동-서 세계 간 교역’에서 한반도가 점하던 위상을 노골적으로 보여주는 바가 있다.

대신 전술한 바와 같이, 1270년대 이래 1330년대에 이르기까지 회화인, 인도인, 이슬람인들의 고려 방문만이 산발적으로 지속되었다. 한반도시장이 동-서 세계 간 교역에 종사하던 인도, 이슬람 상인들의 눈에 물품 확보처, 또는 채무이행 및 재개도모를 가능케 할 안식처, 그리고 노예교역의 중간 기착지 등 여러 다양한 기능을 갖춘 지역시장으로 새로이 비치게 된 결과였다.³⁶⁾ 그들의 방문을 전후하여 천주지역 외국인들의 고려 방문이 폴상적으로나마 계속됐을 것이라 생각한다. 그러나 천주지역으로부터의 ‘한인’ 방문은 이 시기에도 아직 발견되지 않는다.

그런 상황에서, 1350년대에 들어와 천주 출신의 한인상인들마저 고려

35) 『元史』 卷45 本紀45 順帝 至正 18年(1358) 10月 乙酉。

36) 이상의 서술과 관련해서는 이강한, 앞의 논문(2011) 참조.

를 방문하는 사례가 다시금 발견되기 시작한 것으로, 한동안 고려 방문이 뜳했던 그들마저 고려를 다시금 방문하고 있었다면, 명주(경원) 지역 한인상인들 역시 고려 방문을 재개하고 있었을 가능성성이 높다. 이러한 당시의 정황은 당시 강남인들의 고려 방문이 ‘강절이북’ 군웅들을 매개로 한 것에 불과한 것이 아니었음을 ‘지역적으로’ 보여줌과 동시에, 14세기 전반 서역상인들의 고려 방문이 누적된 결과, 강남의 한인상인들 이 한반도시장의 잠재력에 재주목하게 되었을 가능성을 보여준다.³⁷⁾

상황이 이러했다면, 공민왕으로서는 이전의 고려 국왕들이 경험하지 못했던 대단히 유리한 대외교역 조건을 제공받았던 셈이라 할 수 있다. 충렬왕이나 충선왕, 그리고 충숙왕과 충혜왕 모두 강남지역인들의 고려 방문이 중단된 상황에 직면하여 위험부담이 높은 대외진출형 관영교역에 전력할 수밖에 없었지만, 공민왕의 경우 방문하는 중국 강남인들을 통해 다수의 해외교역 상대방들을 용이하게 구할 수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이다.

그런데 당시 공민왕은 이전 국왕들이 겪지 않아도 되었던 몇 가지 악재 또한 상대해야 할 처지에 놓여 있었다. 다음 장에서 살펴보자 한다.

2. 장애적 변수: 투자재원 및 결제수단의 부족

1) 투자재원의 부족: 원 측의 고려물자 정발 재개

충혜왕의 몰락 후 충목왕이 재위해 있을 당시, 1340년대 원제국 내에서는 기황후의 세력이 확장 일로에 있었다. 주지하듯이 기황후는 資政院 등 황실의 재정기관들을 발관으로 수많은 측근들을 거느렸으며, 원 정국을 주도하는 세력으로 부상하였다.

그런데 이러한 1340년대에 접어들어, 특히 충혜왕이 제거된 1343년 직후, 돌연 원 측의 고려물자 정발이 근 반세기 만에 재개되었음이 확인된다. 1344년 3월 원은 사신을 보내 저포를 구했고, 1345년 5월에는 文(紋)苧布를 찾았으며, 1346년 4월에도 문저포를 징구하였다. 그리고 고려는 그러한 요구를 수용하여, 1347년 6월과 1348년 4월 저포를 바치게 된다.³⁸⁾ 원은 또 저포 외에 다른 물자도 구했는데, 1344년 5월 皮幣를

37) 한편 육로로도 요동지역 (상)인들의 방문이 적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데, 서술의 편의 상 그와 관련한 언급은 이후 III장 1절에서 하도록 한다.

구하고 1345년 7월에는 熊羔皮를 구하였다. 1347년 8월에는 元 太僕寺에서 사람을 보내와 耷羅의 말을 취하였고, 1349년 3월에는 고려가 원에 龍席과 竹簾을 바친 것이 확인된다.³⁹⁾

이러한 물자요구의 경향은 이후 4~5년여 동안 다소 위축되었다가, 공민왕 즉위 이후 다시 시작되었다. 고려는 1352년 12월과 1355년 11월 토산물을 바친 것 외에도 1353년 1월 원에 熊羔皮를 바쳤고 3월에는 저포를 바쳤다. 1354년 3월에는 원에서 문저포를 구했고, 5월에는 문저포와 모피를 구하였으며, 1355년 5월 고려가 문저포를 바쳤음이 확인된다.⁴⁰⁾ 물론 1355년 7월 황제가 왕에게 술을 하사하고 문저포 공물을 면제해주었다는 기록이 있어⁴¹⁾ 물자징발이 어느 정도 줄었을 가능성도 엿보이지만, 1356년 공민왕이 물자징발을 금지해줄 것을 다시금 요청하고 있음이 확인되는바, 1355년 물자징발이 중단된 것은 아니었음을 알 수 있다. 오히려 1356년 공민왕이 원 측에 개진한 요구사항들을 통해, 이러한 물자징발이 기황후의 의도 아래 계속되고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⁴²⁾

일찍이 13세기 말 성종의 즉위(1294) 아래 원 측의 고려물자 징구가 감소하는 추세를 보였고, 14세기 초 이후에는 물자징발이 거의 없었음을 고려한다면⁴³⁾, 1340년대 중반 이후 원 측의 이 같은 고려물자 징발은 대단히 갑작스러운 것이라 할 수 있다.⁴⁴⁾ 상당량의 재물을 확보해 원 측에 납공하는 것이 당시 고려의 재정에는 적지 않은 부담이 됐을 가능성이 높다.

물론 공민왕의 경우 1356년을 기점으로 적극적인 재정정책을 단행하여

38) 『高麗史』卷37 世家37 忠穆王卽位年(1344) 3月 乙巳; 忠穆王 元年(1345) 5月 甲申; 忠穆王 2年(1346) 4月 丁丑; 忠穆王 3年(1347) 6月 甲戌; 忠穆王 4年(1348) 4月 丁亥.

39) 『高麗史』卷37 世家37 忠穆王 卽位年(1344) 5月 己酉; 忠穆王 元年(1345) 7月 壬辰; 忠穆王 3年(1347) 8月 戊寅; 忠定王 元年(1349) 3月 甲辰.

40) 『高麗史』卷38 世家38 恭愍王 元年(1352) 12月 庚子; 4年(1355) 11月 庚戌; 卷38 世家38 恭愍王 2年(1353) 1月 戊子; 3月 癸巳; 恭愍王 3年(1354) 3月 辛未; 5月 丁丑; 5月 辛巳; 恭愍王 4年(1355) 5月 壬子.

41) 『高麗史』卷38 世家38 恭愍王 4年(1355) 7月 辛丑.

42) 이강한, 「공민왕 5년(1356) ‘反元改革’의 재검토」, 『대동문화연구』 65(2009).

43) 이강한, 앞의 논문(2007), 1장.

44) 당시 문저포, 괴폐, 웅고괴 등의 징발 규모는 미상이나, 기황후와 경쟁관계에 있던 충혜왕의 대원 교역규모가 금, 은, 보초 외에 ‘포’ 2만 필 정도를 포함하곤 했었음을 참조할 때, 충혜왕의 교역정책 및 왕위 자체를 견제해 뇌워시킨 기황후세력의 고려물자 징발 정도 또한 그에 조응하거나 그를 상회하는 수준이었다고 짐작해볼 수 있을 따름이다.

세입의 규모를 넓혀가려 하고 있었다. 다만 1356년의 재정개혁은 기철세력 등을 제거한 후 그로부터 인력과 토지를 탈각시켜 그 民力과 토지의 새로운 결합들을 창출해내는 데 초점을 둔 조치였던 만큼, 개혁의 범위와 규모는 제한적이었다.⁴⁵⁾ 본격적인 재정개혁으로서의 토지조사 및 호구파악 조치는 1360년대 이후에나 전개되었던바, 즉위 초의 공민왕으로서는 충목왕대 아래 지속되어온 이러한 침탈적 징구에 대응해 재정균형을 유지하는 것이 녹록지 않은 상황이었다. 이런 징구가 공민왕의 교역정책 구사에도 상당한 지장을 초래할 것 역시 명약관화하였다.⁴⁶⁾

무엇보다도 주목할 것은, 원 측이 고려에게 요구한 물자들이 대개 고려의 특산물로서 대외교역에 투입되던 주요 수출품들이었다는 점과, 원 측의 고려특산물 징구가 재개된 시점이 교역정책에 국정을 총동원하다 시피 한 충혜왕이 원과의 분쟁 끝에 제거된 직후였다는 점이라 할 수 있다. 충혜왕의 1332년 및 1343년 퇴위는 모두 원 측과의 경제적 분쟁에 기인했던 측면이 있는바⁴⁷⁾, 충혜왕이 도태된 직후 원 측의 고려물자 징구가 시작되었다는 것은, 고려정부의 관영교역과 경쟁하던 끝에 충혜왕을 제거했던 원 측 경제세력들이 차후 고려 교역세력의 성장을 견제하는 차원에서 고려특산물의 강제징발을 재개한 것이었을 가능성을 시사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만약 원 측의 의도가 그러했다면, 공민왕의 교역정책은 더더욱 정상적으로 추진되기 어려웠을 것으로 판단된다. 게다가 공민왕대 초기 기황후세력의 고려물자 징발은 원정부 내의 여러 관청(宣徽院, 資政院, 將作院, 大府監, 利用監, 太僕寺)을 전 방위적으로 동원하는 형태로 이루어져⁴⁸⁾, 공민왕을 더욱 어렵게 했을 것으로 생각된다.

이상에서 공민왕이 새로운 재정악화 요인을 짊어진 채 교역정책을 추진해야 하는 상황에 놓여 있었음을 살펴보았다. 물론 1356년 이후

45) 이강한, 「공민왕대 재정운용 검토 및 충선왕대 정책지향과의 비교」, 『한국사학보』 34(2009d).

46) 13세기 후반의 경우, 원제국정부의 초기 고려물자 징발량이 고려정부의 對宋, 對金 공물량을 훨씬 상회하였고(이강한, 앞의 논문, 2007, 1장 1절 1항 및 2항 참조), 고려정부 차원의 대원교역 또한 13세기 말이나 재개되었다. 즉, 13세기 후반 '전란과 징발'이라는 변수가 막강한 영향력을 발휘했음이 확인된다. 그중 징발이라는 변수가 재개된 1350년대의 경우에도, 그 변수가 대중국 교역량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충분하다.

47) 이강한, 앞의 논문(2009c).

48) 『高麗史』 卷39 世家39 恭愍王 5年(1356) 10月 戊午.

기황후 측의 고려 내정에 대한 장악력이 잠시 약해지면서, 1340년대 중반 시작돼 10여 년간 계속되던 원 측의 고려물자 정구도 다시금 줄고 있었음이 주목된다. 상황이 그러했다면 고려 측의 재정상태가 호전되면서, 공민왕의 대외교역 정책 또한 새로운 동력을 찾았을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당시 새로운 악재가 원제국 내에 등장하고 있었음이 확인된다. 이 악재가 고려에 직접적 타격을 가했던 것은 아니지만, 원제국 측의 통화질서를 붕괴시켰다는 점에서 공민왕의 무역정책에는 새로운 도전을 가하는 것이었음이 분명하다. 원제국 지폐로서의 元寶鈔의 가치 붕괴가 그것이었다.

2) 결제수단의 부재: 원보초의 몰락

원보초의 가치하락은 엄밀히 말하면 13세기 후반 至元鈔 발행 당시 이미 시작되었다고 할 수 있다. 지원초의 반행 자체가, 中統鈔의 가치가 하락했음을 공인하고 그 명목가를 이전의 1/5로 재조정한 후, 기존 중통초의 가치를 지닌 새 통화(지원초)를 출범시킨 것이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당시 통화발행량이 아직 일정 수위를 넘지 않은 상태였고, 인플레 역시 발생하기 이전이었다. 원보초의 가치 또한 조정과 통제가 가능한 수준에 머물러 있었다.⁴⁹⁾

14세기 전반에도 원보초의 가치를 심각하게 위협한 조치는 몇 번 있었다. 무종이 지원초의 실제 가치를 과도하게 절하한 후 이른바 至大銀鈔를 출범했다가, 인종이 즉위한 후 그것을 회수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혼란이 대표적인 예다. 그러나 원보초의 가치는 그러한 위기를 겪고도 어느 정도 안정을 되찾는 데 성공하였다. 이후 1340년대에 이르기까지, 원보초의 가치는 이전(13세기 말~14세기 초)에 비해 상당히 하락한 상태에서도 일정선을 유지하고 있었다.

그런데 정작 원보초의 위기는 다른 곳에서 조용히 진행되고 있었다. 그리고 그 위기는 종이로 제작되는 지폐의 특성, 즉 지질의 상태에 따라 가치가 쉽게 변동하는 원보초의 고유한 특성에 대한 정부차원의 관리의지가 심각하게 해이해진 데에서 비롯되었다.

애초 원제국정부는 지질관리의 중요성을 절감하고는, 신보초와 구보초

49) 이강한, 「고려후기 원보초의 유입 및 유통 실태」, 『한국사론』 46, 서울대학교 국사학과 (2001).

를 교환해주는 행용기관으로서 ‘行用庫’를 두었다. 이 행용고들은 大都是 물론 원제국 내 각 지역에 설치되어 해진 지폐昏鈔를 신속히 새 지폐로 교환(환전)해주는 역할을 담당하였다. 실제로 금, 은 등의 지금준비물자와 원보초를 교환해주던 平準庫와 함께, 행용고는 원제국이 중국사상 최초로 전 중국 차원의 지폐 유통에 성공하는 데 가장 크게 공헌하였다. 13세기 중반 원보초가 처음 반행된 이래 행용고는 반세기간 별다른 무리 없이 그 기능을 수행하였다.

그런데 14세기 전반, 정확히는 1320년대 들어와 원보초의 운용과 관련한 원제국정부의 여러 법제에 이 ‘행용’의 문제에 대한 지적이 심심찮게 산견되기 시작한다.⁵⁰⁾ 1322년 처음으로 이른바 “結攬小倒(불법적昏鈔 교환)”의 폐단이 법령을 통해 거론되기 시작했고, 1326년 그와 관련한 고액의 ‘工墨(수수료)’ 문제가 거론되었다.⁵¹⁾ 한편 1330년 세 차례에 걸쳐 행용과 관련한 법령들이 반포되었는데, 1월의 법령들에는 행용고의 운영과 관련한 총론적 논의가 담겼고(행용시설의 임무 방기에 대한 지적 및 음성적 鈔 ‘到換’과 고가 수수료의 폐해도 지적됨), 6월의 법령에는 사설 도환주체들이 거둬들인 혼초를 제대로 관에 반납하지 않거나 관의 처벌을 피해 소액을 여러 차례에 나눠 신초로 바꿔 가는 작태가 지적되었으며, 1330년 10월의 법령에는 그러한 폐단을 근절하기 위해 멀쩡한 真鈔를 교환하는 시도에 대한 처벌 규정이 담기기도 하였다.⁵²⁾ 이러한 법령들을 통해, 1320년대 이래 관리들이 행용행정에 태만해진 결과 사람들이 해진 원보초를 새것으로 바꾸는 데 어려움을 겪게 되었고, 여유 있는 자들이 그들을 상대로 구보초를 접수하고 신보초를 지급하는 사설 환전업을 운영하였으며, 그에 그치지 않고 고액의 수수료를 받음으로써 민들을 착취하고 있었음을 엿볼 수 있다.⁵³⁾

50) 1310년대에는 주로 보초의 褫手(挑鈔) 및 위조(僞鈔) 문제가 제기되었다. 『大元聖政國朝典章』에서 그와 관련된 법령들을 확인할 수 있는데, 전자와 관련해서는 1315년의 ‘侏儒挑鈔斷例’나 1316년의 ‘挑補鈔犯人罪名’ 등이 확인되고, 후자와 관련해서는 1319년의 ‘造僞鈔人家產未入官經革’이나 1321년의 ‘僞鈔非正犯遇赦革撥’ 및 ‘僞鈔報未成遇革釋放’ 등이 확인된다.

51) 『至正條格』 卷9 斷例 廕庫, 結攬小倒(1322년 5월); 卷23 條格 倉庫, 關撥鈔本就除工墨(1326년 10월).

52) 『至正條格』 卷23 條格 倉庫, 關防行用庫(1330년 1월); 卷9 斷例 廕庫, 檢閽昏鈔(1330년 1월); 倒鈔作弊(1330년 6월); 倒換昏鈔(1330년 10월).

53) 『元史』 刑法志의 보초 규정들 또한 대체로 혼초 및 행용과 관련된 내용을 담고 있다. 직제조의 경우, 典守鈔庫官이 昏鈔 倒換 시 退印을 찍지 않는 경우에 대한 처벌규정,

이러한 혼란은 이후에도 계속되었다. 원정부는 1331년 10월 在京에 積年토록 還倒된 昏鈔 270여 만 錠을 불태우는 조치를 단행했는데, 행용고의 계속되는 기능 저조 때문이었던 것으로 보인다.⁵⁴⁾ 그러나 행용고의 기능을 정상으로 되돌리지 않는 한, 이러한 조치는 일회적인 것일 수밖에 없었다. 결국 1333년 3월 도환 부진 문제가 다시 거론되었고, 1334년에도 수수료와 관련한 비리가 폐단으로 지적되었으며, 1338년에도 “결람소도”에 관한 법령이 다시금 반행되었다.⁵⁵⁾ 이후 1342년 6개 행용고를 추가로 설치하는 등 원보초의 가치를 잡을 마지막 노력이 시도됐지만 결국은 실패한 것으로 보인다.⁵⁶⁾ 1348년에도 富商大賈들이 모두 ‘사사로이’ 그 초를 바꾸고 있음이 지적되고 있기 때문이다.⁵⁷⁾

이렇듯 14세기 전반 원보초의 가치를 가장 크게 위협한 변수는 결국 혼초의 행용 문제였다고 할 수 있다.⁵⁸⁾ ‘환전이 제대로 안 되는’ 원보초의 가치와 신용에 대한 일반민들의 믿음은 점차 손상돼갔고, 그러한 신뢰의 상실은 바로 원보초의 가치에 반영되어 그 하락을 견인하였다. 결국 원정부는 1350년 원보초제도의 ‘更定’을 논의하기에 이른다.⁵⁹⁾

그런데 당시 呂思誠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僕哲篤과 武祺 등이 새로운 지폐 및 동전을 출범시킨 후 그 두 가지를 ‘겸용’케 할 것을 건의하였음이

鈔庫官이 자신의 昏鈔를 詭名하여 倒換하는 경우에 대한 처벌규정, 平準行用庫에서 昏鈔를 倒換함에 工墨錢을 많이 取하는 경우에 대한 처벌규정 등이 확인되고(卷103 志51 刑法2 職制(下)), 도적죄의 경우 造鈔庫의 工匠으로 합쳐서 폐기해야 할(合毀) 鈔를 私藏하여 出庫한 경우에 대한 처벌규정, 昏鈔行을 검사하는 자가 昏鈔를 盜取하였다가 監臨에게 搜獲된 경우에 대한 처벌규정, 그리고 燒鈔庫에서 合干 檢鈔 行人이 갑자기 昏鈔를 훔쳐 出庫한 경우에 대한 처벌규정 등이 확인된다(卷104 志52 刑法3 盜賊).

54) 『元史』 卷35 本紀35 文宗 至順 2年(1331) 10月 丁巳.

55) 『至正條格』 卷23 條格 倉庫, 添撥鈔本(1333년 3월); 卷9 斷例 廐庫, 提調官不封鈔庫(1334년 12월); 結攬小倒(1338년 1월).

56) 『至正條格』 卷23 條格 倉庫, 添設六行用庫官司庫(1342년 4월).

57) 『元史』 卷186 列傳73 歸暘 “…… 盡易其鈔於私家, 小民何利哉.”

58) 물론 원보초 ‘위조’ 또한 그 가치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쳤다. 1330년 天下에 大赦를 내리면서, 그러한 사면에 해당하지 않는 범죄로서 謀反大逆, 祖父母 및 父母 살해(모의), 妻妾의 殺夫, 奴婢의 殺主 등과 함께 僞鈔 印造가 거론되었음에서 (『元史』 卷37 本紀37 寧宗 至順 3年/1332 10月 庚子) 그를 엿볼 수 있다. 그러나 원보초 위조 문제가 계속되고 있었다는 것은 역설적으로 원보초가 여전히 위조 대상으로 간주될 정도의 가치를 지니고 있었음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하였다. 그에 비해 환전행정의 부재는 원보초의 가치 및 공신성 하락을 야기한 가장 큰 치명적인 변수였다고 하겠다.

59) 吏部尚書 僕哲篤, 左司都事 武祺 등이 更鈔法의 건의를 주도하였다(『元史』 卷42 本紀42 順帝 至正 10年/1350 4月 己丑; 10月 乙未).

주목된다.⁶⁰⁾ 그 결과 기존의 지원초를 대신해서는 中統圓寶交鈔가 발행되고, 새 동전으로는 至正通寶錢이 인조되어 함께 통용되기 시작하였다.⁶¹⁾ 지폐와 동전의 겸용은 애당초 원제국 초기부터 금기시되어왔던 것으로, 명목통화인 지폐와 현물가치를 내재한 동전을 겸용할 경우, 시중에서 지폐가 추방되는 결과로 이어질 수밖에 없음은 전근대 왕조 통화정책의 기본에 해당하였다.⁶²⁾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시 원 황제 순제가 관료들의 이러한 원보초 경정책을 수용한 결과 시중 물가가 10배로 양등하는 등 인플레가 발생하였고, 軍儲 공급과 常賜 獉勞를 위해 원보초가 과다하게 인조되는 바람에 그 가치 역시 급전직하하였으며, 결국 원보초는 시중에서 철저히 벼림받기에 이른다.⁶³⁾ 1353년 이후에는 중통교초의 신규 인조조차 확인되지 않고⁶⁴⁾, 1357년 행용고 대신 편민육고(便民六庫)라는 것이 불시에 만들어져 일회적으로 혼초 교환[倒易] 기능을 수행했을 따름이었다.⁶⁵⁾

당시 원보초의 이러한 가치하락이 공민왕에게는 어떤 영향을 끼쳤을까. 일찍이 충렬왕부터 충목왕에 이르기까지 원 황제 및 황실로부터 다량의 원보초를 하사받았음을 주지의 사실이다. 이렇게 적립된 원보초는 고려 국내에서 사용되기보다는, 국왕들이 원을 방문할 때 지출할 盤廬의 비용으로 사용되곤 하였다. 실제로 고려 국왕들은 원제국 내에서의 사용에 대비하기 위해 다량의 원보초를 필요로 하였다. 충렬왕의 경우 세자 충선왕의 혼인비용을 마련하기 위해 국내에서 마포 등을 징렴해 원에 가서 원보초와 바꾸기도 했으며⁶⁶⁾, 충혜왕은 신료들로부터 원보초를 다량 제공받기도 하였다.⁶⁷⁾

이러한 원보초가 당시 고려 국왕들의 대외무역에도 사용되었을 것임은

60) 『元史』 卷185 列傳72 呂思誠.

61) 『元史』 卷42 本紀42 順帝 至正 10年(1350) 11月 己巳.

62) 1343년에도 보초 운용과 관련한 논의가 있었는데, 揭傒斯가 ‘新舊의 銅錢을 兼行하여 鈔法의 弊를 救하자’고 건의하자 조정 관료들이 모두 반대하였다(『元史』 卷181 列傳68 揭傒斯).

63) 『元史』 卷97 志46 食貨5 鈔法.

64) 『元史』 卷42 本紀42 順帝 至正 12年(1352) 1月 丙午(中統元寶交鈔 190萬 錠·至元鈔 10萬 錠 印造); 卷43 本紀43 順帝 至正 13年(1353) 1月 庚午(中統元寶交鈔 190萬 錠, 至元鈔 10萬 錠 印造).

65) 『元史』 卷45 本紀45 順帝 至正 17年(1357) 4月 丙辰.

66) 『高麗史』 卷79 志33 食貨2 科歛, 忠烈王 21年(1295) 4月.

67) 『高麗史』 卷107 列傳20 權咀 附 權準.

분명하다.⁶⁸⁾ 예컨대 고려정부가 발간한 몽골어 어학교습서 『老乞大』만 보더라도, 고려상인들이 원제국에 가서 물물거래를 하며 다량의 원보초를 확보 또는 지출하고 있음이 확인된다. 양질의 무역수출용 염색저포 제품들을 생산하던 충선왕이나 상인들을 측근으로 부리던 충숙왕, 그리고 중국-이슬람세계 간 교역에 조예가 깊으며 그 담당상인들로서의 회회인들과도 연고가 깊었던 충혜왕 모두, 원과의 무역에서 원보초를 다량 활용했을 것으로 생각된다.

그런데 공민왕의 경우, 그가 채 즉위하기도 전에 원보초의 공신성이 이미 붕괴 수준에 도달해 있었던 것이라 할 수 있다. 아울러 원보초가 원제국 내에서 기축통화로서의 지위를 상실하면서, 국내외 상거래에서 접해온 교환수단, 가치표시수단으로서의 지위 또한 소멸하였다. 그 결과 고려 국왕 또한 대외무역에서 더 이상 원보초를 쓰지 못하게 되어버린 셈이었다. 즉위 이후 공민왕이 원 측으로부터 제공받은 보조의 양도 만만치 않았는데⁶⁹⁾, 그것을 대외무역에는 활용할 수 없는 새로운 상황이 그의 무역정책의 발목을 잡았던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리하여 할 수 없이 공민왕은 가치가 붕괴되어 소용없게 된 원보초의 처분에 나서게 된다. 그는 우선 1354년 6월 원정부의 요청으로 중국으로 출정하던 고려 군인들에게 다량의 보조를 지급하였다.⁷⁰⁾ 이 원보초는 원에서 고려 국왕(또는 정부)에게 보내온 6만 錠을 재원으로 하여 지급되었지만, 기본적으로 고려정부가 그를 접수해 출정 장출들에게 하사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출정 군인들에게 일정량의 보조를 보수의 개념으로,

68) 원보초는 비록 중국의 통화였지만, 서역인들과의 교역에서도 폭넓게 쓰이고 있었다. 1331년의 경우 원정부의 실력자 엔테무르가 일칸국 아부 사이드의 신하 怯列木丁이 바친 물자에 대해 鈔 12萬 錠을 売鈔로 지불하였고(『元史』卷35 本紀35 文宗 至順 2年/1331 2月 甲寅), 아부 사이드 본인의 선물에 원 정부가 鈔 3,300錠 및 여러 물건을 대가로 지불하였던바(卷37 本紀37 寧宗 至順 3年/1332 10月 甲寅), 고려 국왕들도 원내지 및 여타 지역(칸국들)을 대상으로 한 교역에서 원보초를 포괄적으로 사용하였을 가능성이 높다.

69) 1352년 8월에는 원에게 金帶 및 鈔 2,000錠을 하사하였고, 1353년 (왕이) 晉天寺에 행차하여 仁王道場을 設했을 때에는 원에서 寶鈔 100錠을 행사경비로 보냈으며, 1354년 1월에는 원이 王에게 楷幣 1萬 錠, 黃金 1錠, 白銀 9錠을 하사하는 동시에, 莊寧翁主의 사위 魯王이 연회비용[宴錢]으로 楷幣 150錠을 보내오기도 하였다(『高麗史』卷38 世家38 恭愍王 元年/1352 8月 戊午; 恭愍王 2年/1353 3月 甲午; 恭愍王 3年/1354 1月 乙酉; 乙亥).

70) 『高麗史』卷38 世家38 恭愍王 3年(1354) 6月 丙午, 元遣工部寺丞朴賽顥不花齋寶鈔六萬錠賜赴征將卒.

또는 격려나 포상의 차원에서 지급하는 것은 원제국 내에서는 흔히 관찰되는 관행으로⁷¹⁾, 공민왕 역시 그러한 관행의 연장선상에서 고려군에게 보조를 지급한 것이라 여겨진다. 물론 전술했듯이 당시 원제국 내에서 보조의 가치가 심각하게 붕괴해 있었던 만큼 이들에게 지급된 보조의 구매력은 그리 높지 않았겠지만, 그들의 임무수행에 대해 별도의 급부를 지불할 여력이 없는 상황에서, 공민왕으로서는 군인들에게 ‘명목상’의 대가를 지급하는 동시에, 이미 가치가 붕괴해 무용지물이 된 보조들을 기회가 닿는 대로 청산하고자 했던 것으로 생각된다.

유사한 사례로 그가 관원들에게서 마필을 사들이면서 원보초를 하사한 경우도 들어볼 수 있다.⁷²⁾ 1354년 6월 백관으로 하여금 말을 내게 하고, 官府에서 보초로 이를 사들여 高郵 정벌에 나서는 군사들에게 지급한 조치가 그것이다. 종래의 연구에서는 이 조치를 근거로 당시 원보초가 고려 국내에서 일정한 가치를 지닌 채 통용되고 있었으며, 그 결과 원보초가 마필수령의 반대급부로 지급될 수 있었던 것이라 보았다. 그러나 당시 원보초의 고려 내 유입 정도 및 유입가치의 하락 속도⁷³⁾, 그리고 고려 국왕 및 관, 민의 원보초 활용 양태 등을 고려할 때⁷⁴⁾,

71) 1322년 3월 行樞密院에 鈔 4萬 錠을 하사하여 烏撒烏蒙을 정벌하기 위해 조발한陝西·四川의 몽골군 및 漸丁 萬人에게 나누어준 사례(『元史』卷36 本紀36 文宗 至順 3年 /1332 3月 己亥), 1340년 5월 鈔 5萬 錠을 내려 宮闈 內外의 門禁을 守衛하는 唐兀, 左右阿速, 貴赤, 阿兒渾, 欽察 等衛의 군사에게 지급한 사례(卷40 本紀40 順帝 [後]至元 6年/1340 5月 辛未), 1353년 6월 鈔 5萬 錠을 淮南行省 平章政事 達世帖睦邏에게 紿付하여 淮南, 淮北 등처에서 莊丁을 召募하게 한 사례를 들 수 있다(卷43 本紀43 順帝 至正 13年/1353 6月 癸卯).

72) 『高麗史』卷82 志36 兵2 馬政, 慎愍王 3年(1354) 6月,

73) 원보초의 가치하락에 대해서는 이강한, 앞의 논문(2001) 뒤에 실린 부록 표 참조. 이 표는 1230년대부터 1370년대에 이르기까지의 1) 원보초 발행액, 2) 원보초 절하율(가치 변동률) 및 元鈔와 기타 물자 사이의 절가, 그리고 3) 통화환경의 동향 등에 대한 정보를 담고 있다.

74) 필자의 고려 내 원보초 연구에 대해서는 몇 년 전 김도연의 상세한 비판(「元간섭기 화폐유통과 實鈔」, 『한국사학보』 18, 2004)이 제기되어 필자에게 많은 도움이 되었다. 별고를 통해 그에 대한 필자의 입장을 밝힐 기회를 찾지 못해, 부득이하게 본 지면을 빌리고자 한다.

첫째, 고려로 유입된 원보초의 ‘규모’와 관련하여, 김도연은 특정 시점의 원보초 유입량이 당시 원제국정부의 1년치 원보초 인조액에 비춰봤을 때 상당히 많다는 입장을 개진하였다. 반면 필자는 고려로 유입된 원보초의 규모와 그 의미는 1년치 인조액보다는 1260년대 초 이래 ‘몽골사회 내에 누적된’ 원보초의 전체 유통량에 비추어 해야려야 한다고 생각한다. 아울러 특정 시점별로 고려에 유입된 원보초의 ‘지질’ 상태를 파악하는 것이 어려우므로, 기사에 언급된 유입 원보초의 액면가를 실가치로 간주해 그것을 원제국 내 1년치 인조액과 비교하는 것 자체에 신중할 필요가 있다. 무엇보다도 원보초의 초기 고려 유입이 일회적 사례(전합건조 비용, 가축구입 비용)들을 통해서만 관찰되

1350년대 고려에서 원보초가 정상적으로 유통되고 있었을 것이라 추정케 하는 정황은 거의 발견되지 않는다.⁷⁵⁾ 따라서 이때의 원보초 지금 역시,

고, 이후 유입 사례가 늘고 유입 규모가 커지긴 하지만 당시 원보초의 가치가 초기에 비해 1/5, 1/12.5 수준으로 떨어져 그 유입량의 의미를 일정 수준 이상으로 평가하기 어려우며, 인플레를 피하고자 하는 원제국정부의 정책상 한반도로 과도한 양의 원보초가 들어오기는 어려운 상황이었음을 강조하고 싶다.

둘째, 고려 내 원보초의 '유통'과 관련하여, 김도연은 하위계층에게 원보초가 전달된 사례, 국왕과 관료들이 다량의 원보초를 보유한 정황, 고려사찰 중홍에 상당량의 원보초가 투입된 사실 등을 들어, 고려에서 원보초가 적극 유통되었다고 보았다. 필자의 경우, 이에 재고의 여지가 있다고 생각한다. 경제적 능력이 미비한 하위계층에게는 비록 원에서 원보초를 지급했다 하더라도 고려정부가 중간에서 얼마든지 개입해 '변형된 대가 지불'을 시도했을 수 있고, 국왕과 관료의 원보초 보유분은 그들의 빈번한 원제국 왕래를 고려할 때 일종의 대외 지불수단으로서 고려 밖에서 소비되는 경우가 많았을 가능성을 전제하지 않을 수 없으며, 고려 내 사찰중홍을 위해 투입된 원보초 또한 몇 단계의 환전을 거쳐 필요 물자로 전환돼 고려의 사찰에 전달되었을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고려 내 원보초의 유통을 보장하는 정황들로 해석하기는 어렵다고 생각한다. 원보초는 고려 내 대단히 제한된 영역에서 순환하다가 유출되었을 때로 추정된다.

셋째, 고려 내 원보초의 '관리'와 관련하여, 김도연은 물가산정 등의 기능을 수행해온 고려 경시서가 원보초 관련 행정을 관掌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보면서, 고려에 행용고 등이 설치되지 않았어도 고려시장에서 원보초의 유통은 가능했을 것이라 보았다. 그러나 원보초의 지속적인 유통을 위해서는 교환행정을 담당할 사무 인력은 물론, 신규 원보초 확보에 필요한 재원, 교환된 혼초를 보관 후 소각할 시설, 위조방지를 담당할 법규 등이 요구되었다. 따라서 필자로서는 고려의 어느 관부가 그것을 '겸하여 담당했을' 것이라 가정하는 데에 무리가 있음을 지적할 수밖에 없다. 아울러 원제국 내 원보초 가치 유지를 관장했던 평준고, 행용고 등이 고려에는 설치되지 않음에 따라, 고려에 유입된 원보초의 경우 급속한 가치하락이 불가피했을 것으로 생각된다.

넷째, 원보초가 고려 내 은 자산의 가치 및 은병 가치의 변동에 끼친 '영향'과 관련하여, 김도연은 원보초의 유입이 은병 가치 인상의 원인이었을 가능성을 제기하고, 더 나아가 원보초가 일종의 대체통화로 자리매김하여 고려 내 은병 부족분을 메워주었다는 진단을 내리고 있다. 필자의 경우, 원보초로 인한 은, 은병의 가치 변동에 대해서는 기존 연구들의 반복된 주장에도 불구하고 아직 유의미한 인과관계가 제시된 바 없음을 강조하고자 하며, '대체통화기능' 부분에 대해서는 1356년의 통화논의에서 원보초가 언급된 바 없다는 점과, 고려인들이 원보초를 대안통화로 썼다고 보기에는 이후 조선초기 정부의 저화정책이 到換 및 紙質 관리차원에서 지나치게 미숙했던 점을 지적하고 싶다. 따라서 고려 내 원보초의 유통이 활발했을 것이라는 김도연의 전반적 논조에 대해 필자는 동의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며, 그 연장선상에서 공민왕대의 원보초 지출기사들이 당시 고려내 원보초의 유통을 보여준다는 김도연의 입장에 대해서도 필자는 다른 입장을 지니고 있음을 밝히는 바이다.

75) 공민왕이 1354년 1월 원으로부터 받아 창고에 넣은[王悉歸之公府] 저폐 1만 정은 이후 얼마든지 해외에서 지출되거나 대외무역에 투자될 수 있었으므로(뒤에 따라 나오는 '光秀請王除官三百餘人'이라는 문장을 근거로 공민왕이 이 보초를 관료의 녹봉 지금에 활용했다는 관측도 있는데, 필자가 보기에도 두 기사는 서로 별개의 것으로 보아야 할 듯하다), 이러한 기사를 통해 고려 내 원보초의 유통을 논하기는 어렵다. 한편 1354년 2월 원 황제가 하사한 저폐로 耆老들 및 6품 이상의 관료들을 대접했다는 기사의 경우(『高麗史』卷38 世家38 恭愍王 3年/1354 2월 丁巳, 王與公主幸延慶宮與元使宴耆老及六品已上官帝賜楮幣所辦也) 원조의 저폐로 행사를 준비했음을 언급한 기사라는 점에서,

외형상으로는 반대급부를 지급하되 실제로는 원보초를 청산하려는 공민왕의 의도가 강하게 게재된 조치로 해석하는 것이 적절하리라 생각된다. 원보초를 받는 관료들 또한 원보초의 가치하락을 모르지 않았으므로⁷⁶⁾, 당시 정부에 마필을 내고 보초를 받으면서도, ‘보초로 보상을 받았다’고 여기기보다는 이전부터 종종 있어왔던 물품 科歛의 일환으로 마필을 정부에 무상 제공하는 것으로 받아들였을 것이라 생각된다.

이렇게 해서 공민왕은 1356년을 전후하여 여러 다양한 경로로 자신이 소지하던 원보초, 또는 이전의 정부 또는 왕실이 보유하던 잔류 원보초 물량을 거의 소진했을 것으로 생각된다. 통화제도와 관련한 1356년의 논의에서도 향후의 주축통화로 銀瓶, 碎銀, 麻絲, 銀錢 등만 거론되었을 뿐, 원보초의 문제는 일절 언급되고 있지 않음에서 그를 엿볼 수 있다.⁷⁷⁾

그러나 공민왕은 서둘러 보유 원보초를 처분하는 과정에서 향후 원과의 무역 또는 기타 지역과의 무역에 쓸 대체 재원은 확보하지 못했을 가능성 이 높다. 이 문제는 1350년대 중반까지 이어진 원 측의 고려물자 징발과도 결부되어 공민왕에게 크나큰 재정적 피로감을 안겼을 것으로 짐작된다. 더 나아가 공민왕으로 하여금 무역정책 전반을 재고케 했을 수도 있다.

실제로 공민왕은 이어지는 강남인 및 요동인들의 교역 제안에도 불구하고, 그들과의 교류에 상당히 소극적인 자세를 유지하였다. 다음 장에서 살펴보도록 한다.

그를 근거로 ‘당시 원조의 저폐를 써서 필요한 물품을 고려 내에서 살 수 있었으며’ 따라서 ‘원의 저폐가 고려 내에서 유통되었다’는 맥락의 결론을 도출할 수도 있다. 그러나 이러한 원보초 사용이 당시 일반적이었다면 오히려 그것이 기사로 남은 자체가 이상한 일이라 할 수 있다. 이 기사는 오히려 당시 원 저폐의 이러한 고려 내 사용이 ‘이례적’인 것이었음을 의미하는 것이라 생각된다.

76) 당시 고려인들이 원보초의 가치하락세를 잘 인지하고 있었을 가능성은 어학교습서 『노결대』에서 고려상인들에게 원보초 사용과 관련한 주의를 유독 강하게 요구하고 있음에서도 잘 확인된다. 이 책에는 ‘신규 寶鈔, 官印이 선명한 상동 寶鈔’에 대한 고려인들의 강한 집착이 묘사되어 있는데(鄭光 譯註·解題, 『原本 노결대』, 김영사, 2004, 65화, 97화), 책의 특성상 이는 원을 방문하는 고려상인들에게 新鈔의 가치 및 중요성을 사전에 주지시키고, 어떤 경우에든 흠결 없는 저폐를 사용할 것을 강력히 권고한 것이라 할 수 있다.

77) 『高麗史』 卷79 志33 食貨2 貨幣, 恭愍王 5年(1356) 9月.

III. 공민왕대 정부차원 대외교역의 양상

1. 강남 및 요양지역과의 소극적 교류

그간 공민왕대 고려정부와 외국인들 사이의 교류 사례로 흔히 거론돼온 것은 고려정부와 강남군웅들, 그리고 고려정부와 요양행성 성관들 간의 교류였다. 그런데 사료상 전하는 그 교류의 내용은 의의로 단순하여, 그 구체적인 양상을 확인하는 것이 여의치 않다. 정세 변화 및 정치적 여건의 추이를 따라가며 그 양상을 살펴보고자 한다.

1) 강남지역과의 교류

강남군웅들의 교류 제안에 대해, 공민왕은 가끔 적극 화답하기도 했지만, 결코 먼저 소통을 시도하지는 않았다. 언제나 사신이 오면 극진히 대접하되, 제한된 규모의 물자만 교환한 채 돌려보내곤 하였다. 이는 장사성과의 교류 및 방국진과의 교류 모두에서 확인된다.

우선 1358년 7월 장사성이 理問 實刺不花를 보내와 沈香山, 水精山, 畵木屏, 玉帶, 鐵杖, 彩段을 바친 것에 대한 공민왕의 반응에서 그를 엿볼 수 있다. 공민왕은 장사성이 거점을 강절성 동쪽으로 옮긴 것을 축하하고 移鎮浙右], 그간 안부를 묻고자 하였으나 그러지 못했음에 양해를 구했으며, 장사성 측의 ‘便蕃之惠’에 사의를 표명한 후, 물목에 맞춰 답례품을 보냈을 때름이었다.⁷⁸⁾ 해도방어만호 정문빈 역시 ‘土宜’를 바쳐왔지만, 공민왕은 이색더러 답신과 함께 ‘白苧布若干, 黑麻布若干, 虎皮若干, 文豹皮若干’을 보내게 했을 때름이었다. 기존의 연구에서는 공민왕이 방국진보다 장사성, 정문빈과의 교류에 더 적극적이었다고 평가한 바 있지만⁷⁹⁾, 그 차이를 논하는 것이 어려울 정도로 강남군웅들에 대한 공민왕의 대응 자체는 전반적으로 대단히 소극적이었던 것으로 생각된다.

이후의 예방 사례들을 보더라도 유사한 정황을 확인할 수 있다. 장사성, 정문빈이 1359년 4월 다시금 방물을 바쳐왔지만 그에 대한 공민왕의

78) 『高麗史』 卷39 世家39 恭愍王 7年(1358) 7月 甲辰.

79) 김혜원, 앞의 논문

답신은 없었고, 그들이 3개월 뒤 다시 사신을 보내와 彩段, 金帶, 美酒를 바치자, 공민왕은 그제서야 답신을 한 것으로 확인된다.⁸⁰⁾ 당시 정문빈이 보내온 글은 대단히 극진하여(‘장사성[太尉張公]이 강절성에서 복무하며 [鎮綏浙右] 공민왕의 덕풍을 흡모한다[向風不忘]’는 맥락의 표현까지 사용), 그들이 고려와의 통교를 강하게 희구하고 있었음을 엿볼 수 있다. 그에 비해 공민왕은 이색을 시켜 저술케 한 답신에서, ‘사자가 뜻밖에도 빨리 다시 왔다’며 강절성 관원들의 적극성에 놀라거나 심지어 의아해하는 모습을 보였고(‘不意使者回舟如是之速也’), 역시 토산물을 얼마 주었을 뿐이었다. 강절성 관원들의 교류 제안에 거의 무관심하기까지 한 모습이라 평가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사성 및 강절성의 고려에 대한 구애는 이후에도 계속되었다. 1360년 7월 강절성 李右丞이 沈香, 匹段, 玉帶, 弓劍을 바쳤고, 장사성은 1361년 3월 綵段, 玉壘, 沈香, 弓矢를, 1362년 7월 沈香, 佛玉, 香爐, 玉香合, 綵段, 書軸 등을, 1363년 4월에는 彩段, 羊, 孔雀 등을, 1364년 4월과 7월에는 玉纓, 玉頂子, 綵段 40필, 그리고 1365년 4월에는 방물 등을 공민왕에게 전달해 왔다.⁸¹⁾ 이에 대해 공민왕이 보빙을 한 것은 단 1회에 불과하였다.⁸²⁾

이러한 추세는 방국진과의 교류에서도 유사하게 전개되었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방국진은 1358년 5월 및 1359년 8월 사신을 보내와 토산물을 바쳤고, 이후 한동안 방문이 뜸하다가 1364년 6월 明州司徒자격으로 沈香, 弓矢 및 玉海, 通志 등의 서적을 바쳤으며, 1365년 8월 및 10월에도 고려에 來聘하였다.⁸³⁾ 그러나 그에 대한 공민왕의 답례나 보빙은 사료에 기록된 바 없다.⁸⁴⁾ 즉, 공민왕은 강남과의 적극적 교역을

80) 『高麗史』 卷39 世家39 恭愍王 8年(1359) 4月 辛巳; 7月 甲寅.

81) 『高麗史』 卷39 世家39 恭愍王 9年(1360) 7月 丙子; 恭愍王 10年(1361) 3月 丁巳; 世家40 恭愍王 11年(1362) 7月 庚戌; 恭愍王 12年(1363) 4月 壬子; 恭愍王 13年(1364) 4월 甲辰, 7月 丁亥; 世家41 恭愍王 14年(1365) 4月 辛卯.

82) 『高麗史』 卷40 世家40 恭愍王 13年(1364) 5月 癸酉. 물론 이 외에도 사료에 남아 전하지 않는 답신의 사례들이 있을 수 있다. 일례로 승려 千禧가 당시 공민왕의 친서를 가지고 강절승상 장사성의 동생 장사신을 예방했다는 사실(李檪, 〈水原彰聖寺真覺國師大覺圓照塔碑〉)이 전해지며, 김혜원은 당시 공민왕의 측근 신돈이 강절지방의 상황을 파악하기 위해 회남성 우승 왕성의 고려 방문에 대한 답방을 명분으로 천회를 파견한 것이라고 추정한 바 있다(김혜원, 앞의 논문). 이러한 사례들이 좀 더 발굴되면 강남세력의 소통 시도에 대한 공민왕의 입장을 더 소상히 규명할 수 있게 될 것이다.

83) 『高麗史』 卷40 世家40 恭愍王 13年(1364) 6月 乙卯; 世家41 恭愍王 14年(1365) 8月 庚寅; 10月 癸巳.

모색하기보다, 방문해 오는 강남세력을 및 상인들과 일정 수위의 교류를 유지하는 것으로 일관하는, 대체로 소극적인 모습을 보였던 것이라 할 수 있다.⁸⁵⁾

강남상인들의 방문이 재개되고 있던 당시의 정황은, 이전 국왕들이 처해 있던 상황에 비해 현저하게 유리해진 대외무역 여건임이 분명하였다. 그러나 공민왕은 그러한 개선된 여건에도 불구하고, 원 측의 물자징발로 인한 재정적 부담에 발목을 잡혔고, 중국 내 원보초 체제가 몰락함에 따라 대원무역에 필요한 재원 및 결제수단 또한 확보하지 못한 상황에 처해 있었다. 다시 말해 상인을 유치하고 교역선을 확보하는 등 중국 강남지역을 대상으로 한 적극적 해상교역을 시도하는 데 필요한 재원이 극도로 부족한 상태였던 셈이라 할 수 있다. 그 결과 외국인들의 방문에도 불구하고, 고비용의 대강남 투자, 적극적인 외국진출 투자를 주저하거나 망설인 것으로 생각된다.

그렇다면 공민왕의 그러한 입장은 언제까지 유지되었을까. 강남의 한인군웅들이 1360년대 중반 몰락하면서, 그 여파로 강남상인들의 방문도 이전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줄어들었을 가능성성이 있는데⁸⁶⁾, 그러한

84) 기사상 물자들의 종류와 양이 적어 일종의 ‘선물’로 여겨질 정도이고, 그에 대한 고려 국왕의 반대급부 지불 역시 거의 확인되지 않아, 위의 여러 사례를 ‘교역’과 무관한 정황으로 판단할 소지도 있다. 그러나 당시의 정치, 외교적 상황에서는 ‘물자와 물자’의 ‘일대일’ 등가 교환 형태 외에, ‘물자 대 정책’, ‘물자 대 조치’ 형태의 여러 비등가 교류들 역시 경제 교역적 함의를 지닐 수 있었다.

85) 한편 김혜원의 경우, 당시 홍건적의 침공으로 고려의 처지가 어려운 상황이었음을 고려한다면 보병이 오히려 잊었던 것이라 평가하였고, 당시 장사성에게 과견되었던 고려 사신들의 지위를 고려할 때 공민왕이 장사성과의 교류를 더욱 강화시키려 한 것이라 보았다(김혜원, 앞의 논문). 그러나 당시 장사성의 예방 및 공민왕의 보병에 적지 않은 불균형이 존재했음을 부인하기 어려우며, 사신들의 지위에서 공민왕의 의도를 추출하기는 어렵다고 생각된다(한편 공민왕이 조난당한 강절행성 신인적과 정동행 성관 사이의 혼인을 주선한 배경은 앞으로 궁구될 필요가 있다).

86) 물론 명이 강력한 海禁政策을 발효했던 1380년대에도, 중국상인들의 한반도 방문을 거론하는 벌언들이 명과 고려의 정부 양측에서 나오고 있다. 1386년 7월 명에서 고려상인들의 명 내 밀무역을 비난하며, 이제 자신들도 布匹, 絹子, 段子 등의 물건을 가지고 耽羅에 와서 마필을 구매할 것이라 예고한 것이나(卷136 列傳49 辛禡 4), 1391년 5월 許應의 상소에 ‘(고려의) 무뢰배들이 모두 遠方의 物貨가 주는 이익을 탐하여 본업을 일삼지 않고 몰래 (명에) 갔다가 [...] 저 나라 明 사람을 데리고 와서 그 市素을 마음대로 하게 험’을 지적한 것 등이 그것이다(卷46 世家46 恭讓王 3年/1391 5月 戊戌). 따라서 중국상인들의 고려 방문이 당시에도 일정하게 계속되고 있었음을 분명해 보인다. 다만 명정부가 이후 ‘명과의 무역 이익을 노리는 위장 조공 사절단’을 가려내기 위해 邇羅, 占城, 真臘 등 15개국에勘合符를 수여하여 정규 조공사임을 인증케 하는 “勘合” 제도를 1383년 시행하면서, 동아시아 인근 “南洋 무역”的 구도가 재편되었음이 유의된다. 특히 인도 방면에서 동남아시아에 들어가는 길목에 위치한 동-서 교통의 요충지

상황에서는 공민왕 또한 새로운 교류 대상이 아쉬울 수도 있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그리고 마침 1360년대 초 이래 요동지역으로부터의 방문이 시작되고 있었음이 주목된다. 강절행성에서 적극적으로 공민왕과 통교하려 했던 것만큼이나 요양행성 측에서도 공민왕에게 찾은 접촉을 해왔음이 확인된다.

2) 요양지역과의 교류

고려에 접촉해왔던 요양행성의 고위관료들로는 요양성의 평장 高家奴, 평장 洪寶寶, 평장 劉益과 (우승) 哈刺不花(王右丞과 동일인물로 추정됨), 理問 忽都咲古木兒 및 知遼陽沿海行樞密院事를 맡은 於山帖木兒 등이 확인된다.⁸⁷⁾ 그리고 이 중 고려 공민왕에게 특히 빈번하게 접촉해왔던 것은 고가노와 홍보보였다고 할 수 있다. 이들의 고려 접촉이 1360년 초에 시작된 것은 중서성 冀寧路 지역 등에서 察罕帖木兒와 격돌하던 홍건적의 關先生, 破頭潘 등이 1358년 말 중서성 지역을 벗어나 上都를 함락시키고, 바로 遼陽 지역으로 건너가 고려를 위협하기 시작하던 상황과 무관치 않았던 듯하다.⁸⁸⁾ 그 점에서 요동지역 측으로부터의 고려 접촉 노력이 군사적 성격을 내포하고 있었음을 부인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요양지역과 義州 등지에서 전개된 토벌을 수습하는 노력이 1359년 7월 및 1360년 7월 진행되었고, 1362년 9월에는 요양행성 좌승상 也速이 교전지역에 소재한 군현들을 按撫하기도 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요동지역과 한반도 사이의 경제적 교류가 필요했을 가능성도 제기해볼 수 있다.⁸⁹⁾

고가노의 경우 1361년 4월 요양성 총관 자격으로 공민왕에게 옥 술잔玉皿과 개를 바쳐왔고, 1362년 4월에는 요양성 동지 자격으로 홍건적 격파의 경과를 (공민왕에게) 來報했으며, 다음 달인 5월에는 요양성 평장 자격으로 병사를 요청해오기도 하였다. 이후 8월 원 순제가 공민왕에게 고가노와 함께 盖州, 海州의 紅賊餘黨을 격파하라고 지시한 바 있고,

말라카(Malaca) 등이 1402년 명의 책봉 이후 삼[暹羅]의 통치에서 탈출하여 무역중심지로 번영했는데(佐藤圭四郎, 앞의 논문), 이러한 인근지역의 변화가 중국 강남상인들을 다시금 한반도 '이외' 지역으로 유인해 갔을 가능성도 있다.

87) 『高麗史』 卷43 世家43 恭愍王 20年(1371) 閏3月 己未; 卷41 世家41 恭愍王 16年(1367) 1月 丁亥; 3月 癸卯.

88) 『元史』 卷45 本紀45 順帝 至正 18年(1358) 6月 庚辰; 12月 癸酉.

89) 『元史』 卷45 本紀45 順帝 至正 19年(1359) 7月 戊申; 至正 20年(1360) 7月 辛酉; 卷46 本紀46 順帝 至正 22年(1362) 9月 戊辰.

4개월 뒤인 12월 고가노가 양 4마리를 바쳤음이 확인된다. 몇 년 후인 1366년 8월과 12월 여전히 요양성 평장 자격으로 고가노가 새와 사냥개를 바쳐왔으며, 또다시 몇 년이 지나 1371년 7월 왕우승과 함께 내빙해온 데 이어 1372년에는 이성, 강계 등지에 침구하기도 하였다.⁹⁰⁾ 반면洪寶寶의 경우, 遼陽省 평장 자격으로 1367년 3월 내빙해 왔고, 다음 해인 1368년 1월에도 역시 遼陽省의 平章 자격으로 동료 평장 哈刺不花 등과 함께 고려에 사람을 보내와 명 병력 방어를 준비할 것을 권했으며, 동년 9월 다시금 고려 국왕에게 봉문한 후, 1369년 1월에도 같은 遼陽省에 있던 納哈出과 함께 방문해 왔음이 확인된다.⁹¹⁾

고가노와 흥보보의 경우 그 면면을 자세히 알 수는 없으나, 고가노는 전술한 바와 같이 흥건적 격파의 임무를 부여받은 바 있고, 흥보보의 경우 1365년 8월 중서평장정사로 영전했다는 점에서, 두 사람 모두 강남지역의 한인군웅들처럼 원정부로부터의 이탈을 도모하던 존재들은 아니었던 것으로 생각된다.⁹²⁾ 즉, 두 사람은 요양행성의 성관이었을 따름이었다. 강남지역 제 세력의 경우 강절행성의 성관직을 차지한 후 1350년대 후반 이래 1360년대 중반에 이르기까지 고려에 접촉해왔다 면, 요양성 역시 최고위 성관들이 1360년대 초 이래 1360년대 말에 이르기까지 차례로 고려에 접촉해왔던 것이라 하겠다.⁹³⁾

그런데 대단히 흥미로운 것은, 일찍이 강절행성 쪽 연락에 대한 답신에

90) 『高麗史』 卷39 世家39 恭愍王 10年(1361) 4月 辛巳; 世家40 恭愍王 11年(1362) 4月 丙子; 5月 乙丑; 8月 乙未; 12月 癸巳; 世家41 恭愍王 15年(1366) 8月 己卯; 12月 癸酉; 世家43 恭愍王 20年(1371) 7月 癸丑.

91) 『高麗史』 卷41 世家41 恭愍王 16年(1367) 3月 癸卯; 恭愍王 17年(1368) 1月 戊子; 9月; 恭愍王 18年(1369) 1月 辛丑.

92) 『元史』 卷46 本紀46 順帝 至正 25年(1365) 8月 壬子.

93) 아울러 당시 요동지역 민간상인들의 고려 방문도 이어지고 있었을 가능성도 있다. 반세기 정도 이전의 사례이긴 하나, 1298년 원 공주 보탑실련이 충선왕과의 혼인으로 고려에 왔을 당시 그를 수행한 의녀 송씨의 묘비에, 일찍이 요양행성 광녕부로의 상인 10여 명이 고려에 건너와 국제무역에 종사하다가 죄를 지어 탐라에 유배되었던 사실이 기록되어 있다[程文海(1249~1318), 太原宋氏先德之碑 『楚國文獻公雪樓經先生文集』 卷8 碑銘(장동의, 앞의 책, 305쪽에서 재인용)]. 14세기 전반 요양행성의 상인들이 어느 정도나 고려를 방문했는지는 미상이나, 강남 상인들의 방문보다는 상대적으로 찾았을 가능성이 있다. 해상무역에 비해 육로교역은 상대적으로 작은 규모의 재원으로도 시도가 가능했을 것이기 때문이다. 한편 1384년 10월 定遜衛가 압록강을 건너와 고려와 교역[互市]하고자 하자, 고려정부가 義州에 머물러 교역하는 것만 허락하고 金銀과 牛馬를 쓰는 것은 금한 사례(『高麗史』 卷135 列傳48 辛禡 3)에서도, 요동지역의 고려시장에 대한 관심이 14세기 후반에도 존재했을 가능성을 엿볼 수 있다.

소극적이었던 것과 흡사하게, 공민왕을 비롯한 고려정부는 요양행성 쪽의 연락에도 그리 적극적인 답례의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는 점이다. 이들 세력에 대한 보방 사례가 거의 확인되지 않으며, 1365년 2월 李子松을 遼陽에 보내 黑驥에게 白金과 鞍을 제공한 사례 정도가 확인될 따름이다.⁹⁴⁾ 게다가 공민왕은 원말의 혼란을 틈타 심양에서 행성승상을 자처하던 納哈出(나하추)와도 제한적으로만 교류했을 따름이어서⁹⁵⁾, 공민왕이 요동지역과 맺었던 교류관계 또한 전반적으로 일정 수준을 넘지는 못했던 것으로 짐작된다.

공민왕이 이렇듯 요양행성과의 교류에도 소극적이었던 이유는 무엇이었을까. 강남지역과의 교류에 소극적이었던 이유가 중국 측 기황후세력의 고려물자 정발로 인한 수출물자의 부족 및 원보초의 몰락으로 인한 중국 내 결제수단의 미확보 등 일종의 ‘경제적 비용’ 문제 때문이었다면, 요양지역과의 교류에 소극적이었던 이유는 아무래도 홍건적의 봉기로 인한 지역 정세의 불안정성 및 그를 무릅쓰고 현지와의 교류를 강행했을 경우 치러야 할 것으로 예상되었던 ‘정치적 비용’이었을 가능성이 있다.

공민왕은 이미 1354년 6월 홍건적의 봉기를 전해 듣고 있었으며, 1358년 3월에는 홍건적의 침공을 ‘임박한 가능성으로’ 경계하고 있었다. 따라서 공민왕은 이 지역과의 교류 전망 자체에 대해 회의적인 입장을 지니고 있었을 가능성이 있다. 특히 1359년 2월 홍건적의 위협이 구체화되고, 1360~1362년경 홍건적의 침입을 직접 겪으면서, 요동과의 교류는 더 이상 고려할 만한 가치가 없는 사안이 되었을 수 있다.⁹⁶⁾ 아울러 원정부가 홍건적의 난에 대응하는 와중에 복수의 정치세력이 요동지역의 정세에 개입하게 된 결과, 고려 측의 당 지역 접근이 여의치 않았거나, 오히려 불필요한 정치적 잡음을 낳을 가능성이 우려되었을 수도 있다.⁹⁷⁾

94) 『高麗史』 卷41 世家41 恭愍王 14年(1365) 2月 丙辰.

95) 1360년대 말~1370년대 초 오간 물자는 마필 몇 마리, 級布 2匹, 婦人金帶 1腰 등에 불과하였다(『高麗史』 世家40 恭愍王 11年/1362 2月 己卯; 世家41 恭愍王 16年/1367 10月 己未; 恭愍王 18年/1369 1月 辛丑; 11月 戊午; 世家42 恭愍王 19年/1370 2月 壬午). 공민왕은 이 밖에도 北元의 吳王, 淮王, 雙哈達王 등과도 교류했는데, 역시 양 120두, 말 40두, 黃金佛 1軀 등이 청혼 요청을 위한 물자로 오갔을 따름이었다(世家41 恭愍王 15年/1366 10月 庚午; 恭愍王 18年/1369 4月 壬辰; 9月 己亥; 10月 甲子; 世家42 恭愍王 19年/1370 3月 甲午).

96) 『高麗史』 卷38 世家38 恭愍王 3年(1354) 6月 辛卯; 世家39 恭愍王 7年(1358) 3月 甲子; 恭愍王 8年(1359) 2月 乙酉.

97) 1358년 12월 遼陽에 출병한 察罕帖木兒는 이후 최고의 권력자가 된 화과첨목아의 부친

그 밖에 1360년대 말에 접어들어 요동지역에 대한 명의 관심이 고려에 부담으로 작용하는 상황이 전개되었음 또한 유의된다. 명은 1369년 이래 1372년에 이르기까지 명과 요동 북원세력 간 전황과 교섭과정을 모두 고려에 통보하는 등 고려가 요동과 교류하는 것을 막고자 하였고, 공민왕은 홍무연호의 사용을 1370년까지 미루었으나 명 측의 그러한 의도를 견제했지만, 고려와 요동지역 간의 연결을 차단하려는 명 측의 의도는 1373년경까지 계속되었다.⁹⁸⁾ 이런 상황에서 공민왕이 요동지역과 활발하게 교류하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생각된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공민왕은 정치·경제적 비용을 감당하지 못해 강남, 요양지역으로부터의 적극적인 ‘구애’에도 불구하고 그에 준하는 답례 및 대응을 하지 못했던 것으로 생각된다. 결국 앞서 살펴보았던 외국인들의 방문 재개라는 긍정적 요인이 재화의 고갈이라는 부정적 요인에 압도당한 결과라 생각된다.

그렇다면 공민왕은 이러한 상황을 어떻게 타개해갔을까. 강절행성이 든 요양행성이든 중국과의 교역에는 완전히 무관심했던 것인가. 그렇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그와 관련하여 공민왕이 1360년대 중반 원의 최고 실력자 확과첩목아와 접촉하고, 1360년대 후반 명과의 교역에도 나섰음이 주목된다. 다음 절에서 살펴보도록 한다.

2. 원 河南王(擴廓帖木兒) 및 명과의 교류

1) 하남왕 및 기황후세력과의 교류

공민왕은 1366년 3월과 5월 密直提學 田祿生을 보내 天下摠兵官 河南王 廓擴帖木兒를 聘하게 하였다. 그러자 동년 11월 河南王이 고려에 사람을 보내와 報聘하였고⁹⁹⁾, 고려도 다음 해인 1367년 5월 장자온을 보내 보빙하였다. 1370년 9월 하남왕이 고려에 사신을 보내온 것을 끝으로¹⁰⁰⁾

이었고, 1359년 7월 요양행성 좌승상이 된 撋思監은 기황후 및 황태자의 측근이었으며, 1363년 봄 關先生의 餘黨이 上都를 침구할 당시 그를 격퇴한 享羅帖木兒는 황제의 측근이었다. 『元史』 卷45 本紀45 順帝 至正 18年/1358 12月 庚辰; 至正 19年/1359 7月 壬辰; 卷46 本紀46 順帝 至正 23年/1363.

98) 김경록, 「공민왕대 국제정세와 대외관계의 전개 양상」, 『역사와 현실』 64(2007), 225쪽.

99) 『元史』 卷47 本紀47 順帝 至正 26年(1366) 10月 甲子.

100) 『高麗史』 卷41 世家41 恭愍王 15年(1366) 3月 庚子; 5月 乙酉; 11月 辛丑; 恭愍王 16年(1367) 5月 戊寅; 世家42 恭愍王 19年(1370) 9月 乙巳.

더 이상의 교류는 확인되지 않는다. 그러나 이 화과첩목아에 대한 공민왕의 접촉 시도에서는, 강절 및 요양행성과의 교류 당시에는 감지되지 않던 적극성이 묻어난다. 무엇보다도 당시 공민왕이 먼저 접촉을 시도한 것으로는 화과첩목아의 사례가 유일하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화과첩목아는 1361년 8월 중서성 東平의 僞丞相 田豐 세력을 토벌, 전풍을 항복시키고 동평지역을 평정했으며, 그 결과 東平의 王士誠과 東昌의 楊誠이 모두 항복하는 등 큰 성과를 내었다. 다음 해인 1362년 6월 田豐과 王士誠이 화과첩목아의 부친 察罕帖木兒를 살해하고 益都로 달아나자, 화과첩목아는 總兵官이 되어 익도를 포위하였고, 황제의 명으로 光祿大夫, 中書平章政事 및 知河南山東等處行樞密院事, 同知詹事院事를 겸하게 되었으며, 1362년 9월 전풍을 드는 홍건적 유복통을 물리친 후, 11월 마침내 익도를 회복하여 전풍, 왕사성 등을 잡아 죽이기에 이른다. 이후 그는 막대한 병력과 경제적 기반을 갖춘 강력한 세력으로 성장하기 시작한다.¹⁰¹⁾

그런데 이후 원정부에서 1364년 3월 화과첩목아로 하여금, 패역을 도모했다는 죄목으로 (황제의 측근이자 화과첩목아의 경쟁자였던) 李羅帖木兒(볼로테무르)라는 인물을 토벌케 하였음이 주목된다. 이 토벌은 황제 순제가 명령한 것이 아니었으며, 사실 기황후의 측근 삭사감이 사주한 것이었다. 이를 알게 된 패라첩목아가 사신을 경사로 보내자, 삭사감 및 박불화는 유배에 처해졌고 패라첩목아는 1364년 4월 다시금 지위와 권력을 회복하였다. 그런데 황태자와 결탁해 있던 화과첩목아는 여전히 패라첩목아를 토벌하고자 하였고(5월 龢寧에 병사를 주둔시킴), 그에 대응하기 위해 大同에서 경사로 향하던 패라첩목아를 황태자가 7월 清河에서 막으면서 일촉즉발의 상황이 전개되었다. 이후 패라첩목아가 결국 경사에 입성함으로써 그와 그의 측근들이 정부의 요직을 차지했고, 황제도 패라첩목아와 화과첩목아의 화해를 중재하는 등 상황이 안정되는 듯했지만, 황태자는 다음 해인 1365년 3월 화과첩목아의 군중에서 패라첩목아에 대한 정벌을 선포하였다. 이에 패라첩목아는 황태자의 모후인 기황후를 諸色總管府에 유폐시키는 것으로 대응했고, 심지어 황태자를 속이기 위해 기황후를 풀어주었다가 다시 유폐시키기도 했지만, 몇 달 뒤인

101) 『元史』 卷46 本紀46 順帝 至正 21年(1361) 8月; 至正 22(1362) 6月 戊子; 9月 癸卯; 11月 乙巳.

1365년 6월 기황후가 풀려나 환궁하면서, 다음 달 패라첩목아가 복주되고 그 측근들도 도망치기에 이른다. 확과첩목아는 1365년 9월 황태자를 호종해 경사로 돌아왔고, 같은 달 태위 중서좌승상에 임명되었으며, 3개월 뒤인 1365년 12월 차황후 기씨가 황후가 되기 두 달 전인 윤10월, 하남왕에 책봉되었다. 그는 關陝, 晉冀, 山東 등처 및 그 이남 전 지역 등 사실상 ‘중서성 소할지역 인근의 軍馬 일체’를 총제하게 되었고, 여러 諸王들의 愛馬로서 總兵, 統兵, 領兵 등을 맡은 관료들 및 전 軍民 일체의 機務, 鐵糧, 名爵, 黲陟, 予奪을 편의에 따라 처리할 것을 허가받는 등, 막대한 군사적·행정적·재정적 권한을 누리게 되었다.¹⁰²⁾

그러한 확과첩목아에게 공민왕이 강남 및 요동지역 때와는 달리 ‘먼저’ 접촉을 시도했음이 주목된다. 그 이유는 과연 무엇이었을까. 공민왕이 여러 정치, 경제적 비용의 문제로 시도하지 못했던 강남지역, 요동지역과의 교역 대신 확과첩목아와의 교류를 선택한 것은, 확과첩목아와의 교류에는 관계구축으로 인해 발생하는 ‘효과’가 투입되어야 할 ‘비용’을 상회하는 측면이 있었기 때문이라 추측해볼 수 있다. 공민왕이 확과첩목아를 최초로 접촉한 시점인 1366년 3월은, 확과첩목아가 앞서 언급한 과정을 거쳐 막대한 권능을 행사하게 된 이후의 시점이다. 그 점에서 공민왕이 원 황제 순제를 능가하는 원제국의 새로운 실력자와 교류를 틈으로써, 정치적·군사적·외교적 실익을 도모하려 했을 가능성이 상정된다. 공민왕이 원 조정의 통제를 벗어나고 있던 강남지역의 군웅세력이나, 홍건적의 난으로 어수선한 요동지역의 정치세력과 교류하기보다, 원 순제의 권위를 위협하며 차기 권력(기황후세력)과 결탁하여 關陝, 晉冀, 山東 및 이남지역 모든 軍民의 업무 일체를 관장하게 된 확과첩목아와 교류하고자 한 것도 어찌 보면 당연한 일이었을 수 있다.

그러나 공민왕과 확과첩목아와의 관계를 정치적인 것으로만 볼 필요는 없다. 공민왕은 확과첩목아와의 교류를 통해 더욱 큰 외교적·경제적 효과를 노렸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그와 관련하여 당시 공민왕이 기황후세력과의 관계 개선을 도모하고 있었음이 주목된다. 공민왕은 1356년 기칠세력을 척결하면서 고려의

102) 『元史』 卷46 本紀46 順帝 至正 24年(1364) 3月 辛卯; 4月 甲午; 乙未; 乙巳; 丁未; 庚戌; 5月 戊辰; 7月 丙戌; 戊子; 庚寅; 至正 25年(1365) 3月 庚申; 丙寅; 4月 庚寅; 6月 乙巳; 7月 乙酉; 8月 癸卯; 9月; 9月 壬午; 12月 乙卯(奇氏를 고쳐 肅良合氏라 하여, 奇氏의 三世에 王爵을 줌); 閏10月 辛未.

내정 개혁 완수를 위해 기씨세력과 절연했지만¹⁰³⁾, 그로 인해 1360년대 초 이른바 ‘덕홍군’ 옹립 국면에 시달렸으며, 국정운영에도 상당한 부담을 느끼고 있었다.¹⁰⁴⁾ 따라서 공민왕으로서는 적절한 시점에 기황후세력과의 관계를 개선하여 정치적 안정성을 회복하고자 했을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화과첩목아는 황태자 및 기황후세력의 군사력을 상징하는 인물이었던바, 화과첩목아와의 교류는 기황후세력과의 화해 및 외교적 공존을 위한 포석이었을 가능성이 높다.

게다가 기황후세력과의 관계 개선은 그 이상의 합의를 지닌 일이었을 가능성이 있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공민왕은 해상을 통한 교류 대상으로서의 중국 해안의 강남지역이나, 육로를 통한 교류 대상으로서의 고려 북변 요동지역과는 교역을 피하면서도, 중국의 내륙, 특히 원제국의 중심부에 해당하는 중서성 소할지역 및 그 인근(하남강북행성, 섬서행성)에서 주로 활동한 화과첩목아와 교류하고자 하였다.¹⁰⁵⁾ 다시 말해 해상, 육로 등을 통해 바로 접촉이 가능한 강절행성이나 요양행성과 교류하기보다, 그보다 더 긴 동선을 전제해야 하는 원 중심부, 특히 대도지역 등지와의 원거리 교역에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었던 셈이다. 이는 교통비용만 따졌을 때에는 잘 납득이 가지 않는 선택이지만, 그러한 전례가 없지는 않다. 일찍이 충선왕, 충숙왕이 원 대도 및 중국 강남지방에서 상당한 존재감을 구축하고 있던 이른바 ‘재원 고려인사회’와 적극적으로 교류한 바 있기 때문이다.

충선왕은 대도와 강남을 오가며 佛事에 助力하거나 名儒에게 麋帛, 金玉, 名畫를 제공하는 등 다량의 錢物을 소비했지만, 그것이 단순한

103) 이강한, 「공민왕 5년(1356) ‘反元改革’의 재검토」, 『대동문화연구』 65(2009e).

104) 그 결과 결국 관제개편도 단행하게 된다. 이강한, 「공민왕대 官制改遍의 내용 및 의미」, 『역사학보』 201(2009f).

105) 화과첩목아의 원래 근거지는 하남강북행성의 하남로(하남부)였지만, 초기 화과첩목아와 전풍, 왕사성 간의 갈등은 중서성 소할의 東平, 益都를 배경으로 전개되었으며, 전풍을 쳐단한 후 둔전만호부를 세웠던 산동로나 그 이후 잠시 주둔한 黟寧路 모두 중서성 소할지역이었다(『元史』 卷46 本紀46 順帝 至正 23年/1363 2月 庚子; 3月 辛丑). 폐라첩목아와 격돌한 彰德路, 晉寧路, 真定路, 大同路 모두 중서성 소할지역이었고, 이 외의 지역들 역시 섬서행성 延安路(1360년대 말에는 原州, 涇州, 蘭州 등지; 『明史』 卷2 本紀2 太祖 朱元璋 2 洪武 2年/1369 7月)나 하남강북행성의 安陸府 등에 걸쳐 있었을 따름이며, 장양필을 공략하며 경유했던 濟南路, 滬州 등지도 모두 중서성 지역들이었다. 심지어 순제가 이후 화과첩목아를 초유하거나 그 정별을 명할 때 거론된 衛輝路, 順德路나 화과첩목아가 재기를 도모할 때 거쳤던 澤州 역시 중서성 소할지역이었다.

재물의 낭비는 아니었다. ‘海印居士’라 자처할 만큼 독실한 불교 신자였던 그는 大慶壽寺, 天寧寺 등의 공간에서 西雲寺의 臨濟宗師 子安, 下天竺寺의 鳳山儀 禪師, 임제종 僧 智延 등의 천태종 승려들과 교류했고, 혜인고려사에서 화엄 승려 麗水盤曲과 교류했으며, 고려 환관 李三眞이 창건한 천태법왕사에 왕래하는 동시에, 라마교 법회에도 참석하는 등 다양한 종교 활동을 보였는데, 그러한 종교 활동이 다양한 형태의 ‘경제적 투자 행위’로 나타났으며¹⁰⁶⁾, 그러한 종교적 투자들이 여러 다양한 ‘영리 추구 행위’로 확대돼갔기 때문이다. 충선왕이 원에 있을 당시 從臣 白應丘가 食貨를 잘해 濬王府의 일을 맡았던 것이나, 李凌幹이 王을 따라 원에 있으면서 盤纏別監 노릇을 하던 당시 함께 일하는 자들이 모두 致富했다는 일화, 그리고 충선왕의 측근 朴景亮이 ‘여러 번 賞賜를 입어 產業을 경영하고 있다’는 비판을 들은 점이나, 역시 충선왕의 측근이었던 金怡가 가죽을 횡렬한 혐의로 고발당한 일 등은 그를 잘 보여준다.¹⁰⁷⁾ 게다가 충선왕 세력의 그러한 면모를 원의 저명한 유자 姚燧가 비판한 것 역시¹⁰⁸⁾, 충선왕 세력의 원내 교역행위의 규모와 함의를 암시하는 바가 있다.

아울러 충숙왕 또한 정치적인 이유로 5년여 동안 연경에 억류되어 있으면서 金銀, 米穀, 芧布 등 몇만 필, 몇만 석 규모의 적지 않은 체류 비용을 지출했는데¹⁰⁹⁾, 당시 濬王 王虜가 그러한 盤塵 물자가 충숙왕에게 전달되는 것을 막으려 한 여러 사례를 통해 그 규모가 실로 막대했음을 엿볼 수 있다.¹¹⁰⁾ 아울러 충숙왕은 이러한 재원 외에 懿州의 麋典庫

106) 충선왕은 1305년 大慶壽寺에 세조비 裕聖 輩태후를 위한 대장경 1부를 시납했고, 1312년 9월 대도 심왕부에 있으면서 남산 보녕사판 대장경 50부를 인출해 抗州 일대 의 上竺, 下竺, 集慶, 仙林, 明慶, 演福, 慧因, 崇先, 妙行, 青蓮, 惠力寺에 寄進하였다. 그는 또 1312년 말 대각국사 의천의 도량이었던 慧因寺의 중수 작업을 벌였고, 1313년 9월 백련교계 報恩萬壽堂의 경제적 기반을 제공했으며, 1315년에는 측근들과 함께 혜인사에 토지를 기진하고, 1319년 대도에 廣教寺라는 천태종 사찰을 세우기도 하였다. 張東翼, 『元代麗史資料集錄』 서울대학교출판부(1997); 강호선, 「충렬·충선왕 대臨濟宗 수용과 고려불교의 변화」, 『한국사론』 46(2001); 토니노 푸지오니, 「忠宣王代의 麋·元佛教關係와 抗州 高麗寺」, 『한국사상사학』 18(2002) 등 참조.

107) 『高麗史』 卷91 列傳4 宗室2 江陽公滋 附 王虜; 列傳23 李凌幹; 列傳17 金周鼎; 列傳21 金怡.

108) 충선왕이 姚燧의 詩文을 구하자 요수가 주지 않으려 버티다 결국 건네주었고, 충선왕 이 幣帛, 金玉, 名畫 50篚을 감사의 표시로 제공하자 요수가 그것을 주위의 屬官, 史胥侍從에게 제공하거나 翰林院에 넘겨 公用으로 삼게 한 후, ‘저 濬邦 小國은 오로지 貨利만을 重하게 여기나 나는 능히 경시하므로, 저들로 하여금 大朝는 그렇지 않음을 알게 하려 한다’며 빼긴 일화가 그것이다. 『元史』 卷174 列傳61 姚燧.

109) 『高麗史』 卷35 世家35 忠肅王 8年(1321) 8月 丁巳; 志33 食貨 2 科歛.

店舗, 江南의 土田을 부왕으로부터 물려받고 황제로부터는 萝城·宣城의 양 掃里를 받아 보유하고 있었으며¹¹¹⁾, 燕南人 梁載, 南蠻人 王三錫 등 원내의 여러 상인세력과 교류했는데¹¹²⁾, 그러한 경제적 기반을 토대로 여러 다양한 상행위에 개입했을 가능성이 있다. 왕호가 충숙왕을 공격하면서 ‘황제의 명령’을 자주 거론했음이 확인되는데¹¹³⁾, 당시 황제였던 영종이 그 선황제 인종과 함께 ‘무역을 통한 식리’에 대단히 부정적인 입장을 지닌 국정기조를 견지한 황제였다는 점에서¹¹⁴⁾ 왕호가 원제국의 국정노선을 근거로 충숙왕의 ‘교역행위’를 견제했을 가능성을 엿볼 수 있다. 그리고 심왕 왕호 본인이 (태정제의 조카이자 태정제 측근 倒刺沙의 동지였던) 梁王 王禪과 처남-매부지간으로서¹¹⁵⁾ 원제국 내외의 교역에 개입해 있던 차에, 충숙왕의 경제행위로 인해 손해를 받게 되자 충숙왕을 정치적으로 공격한 것일 가능성도 엿볼 수 있다.¹¹⁶⁾

즉, 14세기 전반 이미 충선왕, 충숙왕이 원 대도 및 강남 내륙지역에서 현지의 종교 및 상업 세력과 다양한 관계를 맺고 있었으며, 그를 통해 ‘정부 주도 교역행위’의 또 다른 전형을 마련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리고 공민왕 또한 화과첩목아와의 접촉을 계기로 그와 비슷한 모습을 보이고 있었던 것이다.

당시 고려인 출신 황후가 득세하고 그녀 주위의 고려인 출신 환관들이 득세하면서, 원내(대도) 고려인사회는 14세기 전반에 비해 더욱 흥성했을 가능성이 있다. 아울러 그러한 변성의 중심에 불교가 있었으며, 특히 기황후가 막대한 재원을 기울여 불교를 후원하였다. 그녀는 태고 보우, 나옹 혜근 등 저명한 고려 승려들 및 그들의 스승이었던 인도 승려

110) 『高麗史』 卷91 列傳4 宗室2 江陽公滋 附 王暠.

111) 『高麗史』 卷35 世家35 忠肅王 15年(1328) 7月 己巳. 이에 대해서는 김혜원, 「고려후기 潘(陽)王의 정치·경제적 기반」, 『국사관논총』 49(1993)에서 자세히 검토한 바 있다.

112) 이강한, 앞의 논문(2009b).

113) 王暠은 충숙왕이 체류비용 마련을 위해 고려민들로부터 다량의 盤纏을 추렴했다가 ‘황제의 견책[天譴]’을 당하자 죄를 면하려고 권귀에게 뇌물을 썼다고 혐난하고, 황제가 刑部에 명해 그 물자들을 推徵케 했음에도 충숙왕이 징수를 멈추지 않았다고 비난 했으며, 충숙왕에게 물자를 전달하는 자는 ‘황제에게 아뢰어 엄하게 징계할 것’이라고 위협하였다. 『高麗史』 卷91 列傳4 宗室2 江陽公滋 附 王暠.

114) 이강한, 앞의 논문(2009b).

115) 金惠苑, 「고려후기 潘王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문학박사학위논문(1999).

116) 위은숙 역시 충숙왕과 그 반전비용의 문제가 그 자체로 교역적 함의를 지니고 있음을 지적한 바 있다. 위은숙, 「13·14세기 고려와 요동의 경제적 교류」, 『민족문화논총』 34(2006).

지공 등을 원조정으로 불러 강설을 시키거나, 박불화, 고용보, 신당주, 강금강 등 고려인 환관들 및 자정원의 막대한 재정을 활용하여 고려, 원 양쪽에서 사원 중수, 사경 후원 등의 형태로 불교를 후원하였다.¹¹⁷⁾ 그녀의 그러한 활동은 본질적으로 정치·문화적 중심지로서의 고려인 사찰에 모여들던 고려인들을 포섭, 결집시키는 것이었는데¹¹⁸⁾, 기황후의 이러한 활동으로 인해 대도의 고려인 거주 규모가 확대되고, 그들의 대중국 경제활동 또한 증폭돼갔을 것으로 생각된다. 고려의 관습 및 물건(옷·혁대·모자·구두 등)들이 원내에 유행하고 고려의 寫經 및 탱화도 원에 들어오게 되었음은 기황후의 불교후원 및 대도 고려인사회 활동이 고려-원 간 교역의 중요한 한 축이었음을 보여주며, 『노걸대』나 「박통사」에서 확인되는 고려인들의 활발한 중국진출¹¹⁹⁾ 및 원내에 들어 가 있던 고려인들의 활동 또한¹²⁰⁾ 대도 고려인사회와 적지 않은 관계를 맺고 있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당시 재원 부족으로 강남 및 요동 지역과의 독자적 교역을 적극 추진하지 못하던 공민왕으로서는, 원내 고려인사회의 그러한 잠재력을 도외시 할 수 없었을 것으로 예상된다.¹²¹⁾ 따라서 어떤 형태로든 대도 기반의 원내 고려인사회와 교류관계를 지속함으로써, 그를 통해 당시 전개되고 있던 고려-원 간의 민간 교역에 효율적으로 편승하고자 했을 가능성이 있다.¹²²⁾

117) 특히 『稼亭集』에서 확인되는 원보초의 고려 유입 사례들을 통해, 전주 만덕산 대화암 보광사나 금강산 장안사 등이 당시 기황후세력의 지원을 받고 있었음이 확인된다.

118) 토니노 푸지오니, 「元代 奇皇后의 佛教後援과 그 政治的意義」, 『보조사상』 17 (2002).

119) 위은숙, 「원간섭기 對元交易-老乞大를 중심으로-」, 『지역과 역사』 4(1997); 정승혜·김양진·장향실·서형국, 『박통사, 원나라 대도를 거닐다』(박문사, 2011).

120) 연경의 조운집결지인 通州 관내 宛平縣에는 '高麗莊'이 세워진 것으로 생각되는데, 韓永이라는 인물이 宛平縣 高麗莊에 묻혔고, 그의 딸의 封君號가 宛平縣君이었으며, 같은 고려인인 中尚卿 金伯顥察과 그 부인 손씨가 이곳 池水村에 사원을 건립하였음이 확인된다(『稼亭集』 卷2, 「京師金孫彌陀寺誌」; 장동익, 앞의 책 170~171쪽에서 재인용). 장동익은 고려인들이 완평현 고려장 등지를 통해 대원무역에 종사했을 것으로 추정하였다.

121) 1340년대 후반~1350년대 전반 원 대도에 살던 고려인들의 경험이 담긴 것으로 평가되는 『박통사』에는 '고려 사람의 돈을 얻으니 30년은 잘될 것'이라거나 '고려인에게서 돈 얻어내기가 어렵다'는 중국, 고려 양국 상인들의 언급이 등장하고(양가죽이나 비단·홍정 끝에), 배 1만여필을 싣고 고려에서 오는 상선의 존재도 언급되고 있다. 이러한 정황들은 당시 원내 고려인들이 만만치 않은 상업세력으로 간주되고 있었음을 암시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122) 마침 1357년의 엽劄별감 파견(엽전매체 강화) 및 1363년의 전국적 '經理(토지조사)'

그런데 공민왕이 원내 고려인사회와 모종의 관계를 구축하는 데에는 그 번영을 가능케 하고 있던 기황후세력과의 관계 재설정이 무엇보다도 필요했을 것으로 생각된다. 고려인 출신 기황후가 황실 및 자정원을 배경으로 막강한 정치권력을 휘두르며 원내 고려인사회의 부흥을 주도하고 있는 상황에서, 공민왕으로서는 무역정책상의 새로운 전기를 마련하는 차원에서라도 기황후세력의 존재를 계속 배타시할 수 없었던 것이라 생각된다. 따라서 새로운 교역의 가능성을 위해 대도 고려인사회에 주목하고, 그에 진입하기 위해 기황후세력과의 화해를 모색하며, 그 첫 단추로 화과첩목아와의 교류를 선택한 것이라 여겨진다. 이렇듯 공민왕의 화과첩목아 접촉은 정치·외교적 의미뿐만 아니라 다분히 경제적인 의미까지도 내포한 전략적 결단이었을 가능성이 높다.

다만 공민왕이 시도했던 이러한 교류가 그리 오래 지속되었던 것 같지는 않다. 1365년과 1366년 공민왕과 화과첩목아 간의 교류가 시작되던 즈음은 화과첩목아가 1360년대 초 이래 권력자로 부상하기 시작해 결국 황태자를 보좌하는 최고권력자의 위상을 구축하는 데 성공한 시점이었다. 화과첩목아 역시 1366년 10월 동생 脱因帖木兒 및 貴高, 完哲 등을 보내 濟南에 駐兵케 하고 山東을 控制한 후, 고려에 담방하였다.¹²³⁾ 반면 공민왕과 화과첩목아 간의 관계가 소강상태를 보이던 1367~1369년은 화과첩목아가 그러한 위상을 상실한 채 원제국정부 및 황실과 갈등하던 시기였다.¹²⁴⁾ 즉, 공민왕은 1365년 윤10월 하남왕 화과첩목아의 부상을 목도하고는 그와의 교류를 꾀하였고, 하남왕 역시 그에 화답하였으나, 그가 권력의 부침을 겪기 시작하자 공민왕이 그와의 교류를 유보하기로

시행 등에 힘입어 고려정부의 수지구조가 어느 정도 개선된 것 역시, 공민왕이 이 시기 비로서 대외교역 투자를 재개하는 데 적지 않은 동력이 되었을 가능성이 높다. 1360년대 중반 고려의 재정상태가 상당히 회복돼 있었음은 1365~1366년 이어진 노국 공주의 장례와 추모役事에 엄청난 재원이 투입된 것에서도 엿볼 수 있다. 이상 이강한, 앞의 논문(2009b) 참조.

123) 『元史』卷47 本紀47 順帝 至正 26年(1366) 10月 甲子。

124) 화과첩목아의 위상은 1367년 중반 이후 흔들리기 시작하였다. 1367년 8월 순제가 화과첩목아의 토벌을 명령했고, 10월 그의 하남왕 왕호를 사탈하였다. 1368년 1월에는 황태자 또한 화과첩목아의 오랜 측근 關保에게 명하여 화과첩목아를 공격할 것을 명했고, 순제 역시 1월과 2월에 걸쳐 화과첩목아의 방자함과 호전성을 비난하였다. 이후 1368년 윤7월 전세가 뒤집어져 화과첩목아가 貴高, 關保 등을 패배시켰고, 河南王, 太傅, 中書左丞相의 직함을 복구하게 되지만, 그는 얼마 안 있어 사망하였다(『元史』卷47 本紀47 順帝 至正 27年/1367 8月 丙午; 10月 壬子; 至正 28年/1368 1月 壬申; 辛巳; 2月 壬寅; 閏7月 己亥; 丁巳).

결심했던 것이라 할 수 있다(이 시기 기황후와의 관계는 자세히 알려진 바 없다). 게다가 원제국정부가 상도로 북상하고, 주원장이 북원을 대대적으로 압박하게 되면서, 공민왕이 화과첩목이나 기황후 등과 교류를 계속 할 동기는 점점 적어졌을 것으로 생각된다. 1370년 9월 하남왕이 오랜만에 고려에 사신을 보내왔음에도 그에 대한 공민왕의 화답이 없었음이 그를 잘 보여준다.¹²⁵⁾

그러나 중국 내 고려인사회와의 접촉은 여전히 공민왕에게 유익한 방안이었을 것이다. 따라서 공민왕은 중국의 새로운 강자인 명과의 관계 설정이 시급히 필요했을 것으로 생각된다. 실제로 새로이 중원을 접수한 명과 고려의 접촉이 1368~1369년을 전후해 시작되었으며, 공민왕은 요동을 둘러싼 명과의 긴장에도 불구하고 관계개편 등을 통해 명과의 관계 강화에 본격적으로 나섰음이 확인된다.¹²⁶⁾

2) 명과의 교류 부진 및 민간상인들의 활약

그런데 명 측이 건국 초부터 상상을 초월하는 규모의 물자 진공을 요구해오면서, 공민왕의 대중국 무역 시도는 다시금 암초에 부딪힌 것으로 보인다. 명이 1370년 5월 고려 국왕을 책봉하는 순간¹²⁷⁾ 고려의 공물 진헌이 시작됐는데, 1369년 점성, 안남과 함께 고려가 입贡을 하였다는 기록, 1371년 安南, 淳泥, 三佛齊, 邊羅, 日本, 直臘과 함께 入貢하였다는 기록이 확인된다.¹²⁸⁾ 또 고려는 공물 외에 제주의 말도 바치기 시작하였다. 1372년 4월의 6필 및 1372년 11월의 50필 진상, 그리고 1373년 1월 고려가 千秋節을 축하하면서 제주 말 19필 등을 바친 것¹²⁹⁾ 등을 통해 그를 확인할 수 있다.

물론 1372년 고려가 瑣里, 占城, 琉球, 烏斯藏과 함께 入貢하였다는

125) 물론 화과첩목이는 1375년 사망하기 이전인 1373년에도 이전 원 종서성 소할지역이었던 雁門과 大同 지역을 공략하는 등, 여전히 중원에서 활동하고 있었음이 확인된다(『明史』卷2 本紀2 太祖 朱元璋 2 洪武 6年/1373 6月 壬辰; 11月 壬子). 그러나 명의 병력과 대치 중인 상황에서 화과첩목아와 고려 사이의 교류가 이어졌을 것이라 보기는 어렵다고 하겠다.

126) 이강한, 앞의 논문(2009f).

127) 『高麗史』卷42 世家42 恭愍王 19年(1370) 5月 甲寅; 『明史』卷2 本紀2 太祖 洪武 2年(1369) 8月 丙子.

128) 『明史』卷2 本紀2 太祖 洪武 2年(1369) 是年; 洪武 4年(1371) 是年.

129) 『高麗史』卷43 世家43 恭愍王 21年(1372) 4月 丙午; 11月 壬申; 世家44 恭愍王 22年(1373) 7月 甲辰.

기사에서, 명 황제가 高麗의 貢使더러 이후에는 ‘三年一貢’케 하였음이 확인된다.¹³⁰⁾ 고려 측 기록에 따르면 황제는 ‘高麗의 貢獻이 繁數하여 그 백성이 피곤’하고, ‘바다를 건너 돌아가다가 覆溺할 것도 걱정스러우므로’, ‘古諸侯의 禮를 준수하여 三年一聘’하고, ‘貢物은 고려 土產布 3~5件만 하라’고 지시했다는 것이다.¹³¹⁾ 외형상으로는 명 측의 배려로 인해 고려의 진공 부담이 줄어들었을 가능성도 상정되지만, 이러한 ‘배려’ 조치는 고려의 입공에 대한 경제적 회답의 부담, 중국 국내경제의 교란에 대한 우려(이전 소동파의 우려처럼), 그리고 고려인들의 명 정탐 등 안보상의 위협에 대한 대응에서 비롯된 것이었다. 1370년 명 중서성에서 ‘高麗의 貢使들이 私物을 많이 갖고 와 入貨하니 마땅히 徵稅해야 할 것이며, 많이들 中國 물자를 가지고 出境하니 禁하는 것이 편하다’고 한 것이¹³²⁾ 그를 잘 보여준다.

그런데 명 측의 이러한 입장은 사실 고려에게는 감내하기 어려운 정치, 외교적 압박이었다. 그리하여 고려는 1374년 2월 육로 조공을 허락할 것을 요청하고, 방물도 본래대로 바치게 해줄 것을 요청하였다. 이후의 기록에서 확인되듯이 포자 3~5件(對)만을 보내라는 명의 지시에도 불구하고 ‘상공에 넘치는 예물(金銀·器皿·彩席·苧麻布·豹獺皮)’ 및 백저포 300필 등을 보내기도 하였다. 그러나 명은 해로를 통한 조공만을 허락하였을 뿐 육로 조공은 여전히 불허하였고, 3년1빙 원칙을 고수함으로써 공민왕의 요청을 모두 거부한 채, 예물 등의 물품도 대부분 고려에 돌려보낸 것으로 전해진다. 그런데 한편으로 명이 1374년 4월 사신을 보내와, 원대에 제주에 방목한 말이 2~3만 필에 이를 것이라면서 그중 2천 필을 요구하였음이 확인된다.¹³³⁾ 고려는 결국 마필 진상을 대가로 조공로의 개통을 도모하였다. 명 측 기록에 따르면 고려의 입공은 이후 (해로를 통해) 계속되었던 것으로 보이며¹³⁴⁾, 마필제공 역시 계속되었다.

130) 『明史』卷2 本紀2 太祖 洪武 5年(1372) 是年.

131) 『高麗史』卷44 世家44 恭愍王 22年(1373) 7月 20日.

132) 『明史』卷320 列傳208 外國1 朝鮮.

133) 『高麗史』卷44 世家44 恭愍王 23年(1374) 2月 甲子; 6月 壬子; 4月 戊申. 공마 문재 및 마무역과 관련해서는 김순자, 『한국중세한중관계사』(혜안, 2007) 참조.

134) 『明史』卷2 本紀2 太祖 洪武 6年(1373); 洪武 8年(1375); 洪武 9年(1376); 洪武 10年(1377); 洪武 11年(1378).

이러한 상황에서, 고려정부의 대중국 관영무역이 정책적으로 지속되는 어려웠을 것으로 생각된다. 결국 민간상인들이나 관료, 사회 고위층의 대원 사교역만 계속되었다.

민간상인들의 대중국 무역과 관련해서는, 명정부가 1373년 7월 고려에 내린 조서(宣諭)의 내용이 유의된다. 이 선유는 일찍이 고려인(고려상인)들이 육로로 와서는 해로로 돌아가려고 하는 것을 금지한 바 있음을 언급하고, 그것이 고려인들이 산동 일대에서 船隻과 軍馬의 動靜을 살피려 했기 때문이라 하였다. 아울러 고려가 제주지역의 마필을 가져오겠다고 하고서는 가져오지 않고 있으며, 매매하러 오는 장사꾼들은 (명이) 필요로 하지도 않은 布와 자리[席]는 가져오면서도 말은 한 마리도 팔기 위해 가지고 오는 일이 없다는 점 또한 불평했는데¹³⁵⁾, 고려 민간상인들의 중국 왕래가 계속되고 있음을 엿보게 하는 언급이다. 비록 공민왕대 사후인 1380년대 중반의 사례이긴 하지만, 1386년 7월 정동주가 명으로부터 돌아오면서 받아온 조서[宣諭聖旨]에도 유사한 맥락의 내용이 담겨 있다. 한반도인들이 옛날 漢·唐 시절부터 중국에 와서 매매를 빙자하여 정탐[打細]을 하였고, 좋은 공장[匠人]들을 돈을 주고 데려갔으며, 근년에도 남몰래[悄悄] 무역을 하니, 그런 행위를 계속하면 잡아 가두고 용서치 않을 것임을 명이 천명한 것이다. 또 고려인들이 분명한 시행 증명을 가지고 와서 무역한다면[明白將路引來] 육·해로를 막론하고 마음대로 무역할 수 있게 허용할 것임을 언급하면서, (위와 같이 한다면) 遼陽, 山東, 金城, 大倉에서 곧바로 陝西, 四川에 이르러 무역을 하더라도 금지하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하였다.¹³⁶⁾

한편 이 선유는 그에 그치지 않고, 관료세력의 대중국 무역 또한 언급하고 있다. 당해 연도의 ‘신년 축하 사신’이 4개월 전에 와서 정탐을

135) 『高麗史』 卷44 世家44 恭愍王 22年(1373) 7月 24日.

136) 『高麗史』 卷136 列傳49 辛禡 4年. 이러한 정황은 이후에도 계속되었다. 1388년 8월 ‘商賈의 무리가 權門에 의탁해 백성을 聚斂하고, 권세가도 장사를 하며 貂皮, 松子, 人蔘, 蜂蜜, 黃蠟, 米豆 등을 징렴’하는 등, 대외교역 물자를 확보하기 위해 백성들을 침탈하였다(『高麗史節要』 卷33). 1391년 3월에는 房士良이 ‘[고려인들이] 貴賤을 막론하고 외국물품을 구매하고, 상인들이 폐 지어 소와 말에 금, 은을 싣고 날마다 異域에 달려간다’고 개탄하였다(『高麗史』 卷85 志39 刑法2 禁令). 1391년 5월에는 許應이 관료의 紗羅 段子 착용을 금지해 商販을 끊자고 하였고(『高麗史』 卷46 世家46 恭讓王 3年/1391 5月 戊戌), 같은 달 ‘牛馬, 金銀, 苫麻布를 가지고 몰래 遼瀋에 가서 上國과 互市하는 자’들의 왕래가 도로에 끊이지 않자 고려정부가 그를 금지하기도 하였다(5月己酉).

하였으며, ‘이씨 성을 가진 내시’ 등이 達達, 回回 등 여러 종족인과 더불어 와서 교역과 정탐을 일삼고 있음이 지적되어 있는데, 기사의 외형상으로는 정탐행위를 질타하고 있지만, 民間 · 使行의 밀무역 또는 사무역을 겨냥한 연급이라 할 수 있다. 전술한 1370년의 기사처럼 관료들의 사적 무역을 보여주는 정황이라 할 만하다. 사실 공민왕대 이래 명에 사신으로 가는 자들이 대부분 金銀과 土產을 갖고가 彩帛과 輕貨를 사 가지고 왔으며, 有識한 자들까지도 權貴의 부탁으로 명에 갖고 가는 물품[私裝]이 공헌물의 9/10가 될 정도였던 것으로 전해지는데¹³⁷⁾, 이런 기사들을 통해 당시 사행무역의 규모가 상당하였음을 엿볼 수 있다.¹³⁸⁾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공민왕은 강남상인들의 방문 재개라는 호조건 속에서도 중국 측의 물자징발 및 원보초의 몰락 등 여러 예상외의 악재를 만났던 탓에 해상을 매개로 한 강남지역과의 교역에 소극적일 수밖에 없었고, 그로 인해 발생하는 손해를 한반도 북변지역과의 교류를 통해 보전하려 들기에는 요동지역의 사정이 군사적으로 너무나 불안정하였다. 그리하여 그는 해상을 경유한 강절행성과의 교류나 육로를 경유한 요양행성과의 교류 대신, 고려의 재정상황이 어느정도 회복된 1360년대 중반 이후에나, 당시 원제국정부의 권력 중심부에서 정치, 경제적 권능을 행사하던 최고실력자들과 교류하고, 그를 통해 원내 고려인사회와도 접촉하고자 하였다. 그의 이러한 시도는 몇 년간 지속되었을 것으로 보이지만, 이후 명의 등장 및 명 측의 물자징발로 인해 역시 실패로 돌아갔을 것으로 생각된다.

137) 『高麗史』 卷112 列傳25 朴宜中.

138) 이러한 추세 역시 공민왕대 이후에도 계속되었다. 安軸은 ‘利를 탐하는 무식한 자’들이 명에 갈 때 소지하는 私物이 명에 진현할 공물의 80~90%에 이르니 사신이 소지할 수 있는 私物의 규모를 등급별로 제한하고 정액 외의 金銀, 馬匹, 布匹을 소지하는 경우 극형에 처할 것을 경의하였고(『高麗史』 卷109 列傳22 安軸), 이후 고려정부가 실제로 平壤府에서 방물을 검사케 했음이 확인된다(『高麗史』 卷116 列傳29 沈德符). 1386년 6월경에는 安翊이 사신들이 돌아올 때마다 권력자들이 뇌물의 양을 따져 벼슬을 주거나 배척하므로 사신들이 화를 면하기 위해 (사행)무역을 안 할 수 없다고 탄식하였다(『高麗史節要』 卷32). 공양왕도 1391년 9월 세자의 조건 당시, 함께 가는 자들이 利를 貪하고 무역을 하여 중국의 웃음거리가 되는 것을 막으라 하였다(『高麗史』 卷46 世家46 恭愍王 3年/1391 9月 丙戌). ‘북원에 행상하던 전 찬성사 禹磾의 가노(『高麗史』 卷44 世家44 恭愍王 23年/1374 9月 辛巳)’ 역시 고위공직자의 대리상인 또는 사행무역에 나선 관료의 가노로 추정된다.

IV. 맷음말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공민왕대의 한–중 간 무역 여건은 이전의 그것과 사뭇 달랐다고 할 수 있다. 강절행성 및 요양행성으로부터의 고려정부 통교 시도, 중국 측(원, 명)의 고려물자 징발 재개, 100여 년간 지속된 원제국 기축통화로서의 원보초의 몰락, 그리고 요동지역 홍건적의 난 등 어느 것 하나 공민왕에게는 새롭고 충격적인 변수가 아닐 수 없었다. 그중 고려정부의 대중국(대원, 대명) 교역에 긍정적이거나 고려 민간상인들의 중국 진출에 유리한 조건은 가능한 한 활용하고, 부정적이거나 불리한 상황에 대해서는 그 나름대로 대응한 결과가 바로 공민왕의 대중국 관영교역 정책이었다고 하겠다.

공민왕대 교역정책의 이러한 제 양상들은, 13세기 말 고려정부가 대중국(대원) 무역을 재개한 아래 견지했던 교역 양태와는 자못 다른 것이었다고 할 수 있다. 이전의 대중국 교역은 주로 고려정부가 해상을 경유해 교역선을 원의 강남에 파견하거나 투자물자를 육로를 통해 요동 등지로 운송하는 형태를 보였고, 그러한 교역선 및 교역단의 파견을 뒷받침하기 위해 ‘물자생산 체제’를 갖추거나 ‘상인을 측근으로’ 기용하는 양상을 띠었다. 그러나 공민왕대에는 강남, 요동 등지와의 직교역은 거의 발견되지 않는 반면 오히려 원 내지 대도를 거점으로 활동하고 있던 세력과 적극적으로 교류하려는 모습이 확인되며, 원내 고려인사회와의 교섭 노력에서는 14세기 초 충선왕, 충숙왕대를 연상시키는 바가 있다.

공민왕대의 대중국교역은, 13세기 초 이래 고려와 200여 년 가까이 공존해왔던 원제국과의 경제적 교역이 최소한 정부의 관영 교역 차원에서는 어떠한 모습으로 마무리되었는지를 보여주는 중요한 역사적 정황이라 할 수 있다. 아울러 그 전과는 달라진 여건에서 시도된 여러 변화된 정책들의 모습을 통해, 13–14세기 고려–원 교역의 또 다른 특징들을 마저 확인케 하는 정황이라 할 것이다.

참 고 문 헌

- 강호선, 「충렬·충선왕대 臨濟宗 수용과 고려불교의 변화」. 『한국사론』 46, 2001.
- 김경록, 「공민왕대 국제정세와 대외관계의 전개 양상」. 『역사와 현실』 64, 2007.
- 김도연, 「元간섭기 화폐유통과 寶鈔」. 『한국사학보』 18, 2004.
- 김보한, 「中世 麗·日 관계와 倭寇의 발생 원인」. 『왜구·위사 문제와 한일관계』, 한일 관계사연구논집 4, 경인문화사, 2005.
- 김순자, 『한국중세한중관계사』. 혜안, 2007.
- 김혜원, 「고려후기 潘(陽)王의 정치·경제적 기반」. 『국사관논총』 49, 1993.
- _____, 「高麗 恭愍王代 對外政策과 漢人群雄」. 『백산학보』 51, 1998.
- _____, 「고려후기 潘王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문학박사학위논문, 1999.
- 위은숙, 「元干涉期 對元交易-老乞大를 中心으로-」. 『지역과 역사』 4, 1997.
- _____, 「13·14세기 고려와 요동의 경제적 교류」. 『민족문화논총』 34, 2006.
- 이강한, 「고려후기 원보초의 유입 및 유통 실태」. 『한국사론』 46, 서울대학교 국사학과, 2001.
- _____, 「13-14세기 고려-원 교역의 전개와 성격」. 서울대학교 문학박사학위논문, 2007.
- _____, 「고려 충선왕·元 武宗의 재정운용 및 '정책공유'」. 『동방학지』 143, 2008.
- _____, 「고려 충숙왕의 田民辨定 및 상인등용」. 『역사와 현실』 72, 2009.
- _____, 「고려 충혜왕대 무역정책의 내용 및 의미」. 『한국중세사연구』 27, 2009.
- _____, 「공민왕대 官制改遍의 내용 및 의미」. 『역사학보』 201, 2009.
- _____, 「공민왕대 재정운용 검토 및 충선왕 대 정책지향과의 비교」. 『한국사학보』 34, 2009.
- _____, 「공민왕 5년(1356) '反元改革'의 재검토」. 『대동문화연구』 65, 2009.
- _____, 「1270-80년대 고려 내 鷹坊 운영 및 대외무역」. 『한국사연구』 146, 2009.
- _____, 「13세기 말 고려 대외무역선의 활동과 元代 '關稅'의 문제」. 『도서문화』 36, 2010.
- _____, 「1270년대-1330년대 외국인들의 고려 방문: 13-14세기 동-서 교역에서의 한반도의 새로운 위상」. 『한국중세사연구』 30, 2011.
- 장동익, 『高麗後期外交史研究』. 一潮閣, 1994.
- _____, 『元代麗史資料集錄』. 서울대학교출판부, 1997.
- 정승혜·김양진·장향실·서형국, 『박통사, 원나라 대도를 거닐다』, 박문사, 2011.
- 토니노 푸지오니, 「元代 奇皇后의 佛教後援과 그 政治的意義」. 『보조사상』 17, 2002.
- _____, 「忠宣王代의 麗·元 佛教關係와 杭州 高麗寺」. 『한국사상사학』 18, 2002.
- 檀上寛, 「明初の海禁と朝貢-明朝專制支配の理解に寄せて」. 森正夫 等著, 『明清時代史の基本

問題』(汲古書元, 1997).
佐藤圭四郎, 「嘉靖・萬曆年間の南海交通」. 『イスラーム商業史の研究』, 同朋社, 1981.

국 문 요 약

공민왕대의 한-중 간(고려-원 간) 교역 여건은 이전의 그것과는 사뭇 달랐다. 강절행성 및 요양행성으로부터의 방문 재개, 그리고 그에 수반된 상인들의 고려 재방문 등은 고려-원 간 교역을 중개할 중국 측 무역주체들의 고려 왕래를 의미했다는 점에서, 분명 공민왕의 교역정책에는 유리한 정황이었다. 그러나 같은 시기 재개된 기황후세력의 고려물자 징발, 그리고 1350년대 전반 원보초의 급격한 가치하락 및 퇴출 등은 공민왕의 무역정책에 심각한 악재가 될 다분히 부정적 정황이었다. 이 두 가지 긍정적 · 부정적 정황 중 후자가 전자를 압도한 탓에 공민왕은 적극적인 교역정책을 구사할 여력을 상실하게 되었으며, 그 결과 강남행성이든 요양행성이든 중국 측의 적극적인 교류 제의에 상당히 소극적인 자세로 일관하게 된다.

그러나 공민왕이 대원, 대중국 교역의 가능성을 포기한 것은 아니었으며, 그가 확과첩목아와의 교류를 통해 활로를 타개해나가려 한 모습에서 그를 확인할 수 있다. 확과첩목아는 공민왕으로서는 기황후세력과의 관계 개선을 도모할 통로였던 동시에, 기황후세력과의 개선된 관계를 기반으로 공민왕이 원내 대도지역 고려인사회와의 경제적 번영에 접촉할 창구였다. 한편 이후 원의 몰락으로 그것이 더 이상 가능하지 않게 되자, 공민왕은 명과도 다양한 형태의 접촉을 시도한 것으로 보이는데, 그러한 시도들이 답보상태를 보이는 한편으로, 고려 민간상인들 및 관료, 권세가들의 대원, 대명 사교역이 더욱 활기를 띠게 된다.

공민왕대의 대외교역 정책은 13세기 후반 이래 100여 년 가까이 지속돼온 고려-원 간 제국과의 교류가 정부주도 교역의 영역에서는 어떠한 모습으로 마무리되었는지를 보여주는 중요한 역사적 정황이라 할 수 있다.

투고일 2011. 11. 1.

수정일 2011. 11. 24.

개재 확정일 2011. 11. 29.

주제어(keyword) 공민왕(Gongmin-wang), 무역정책 및 여건(Trade policy and environment), 중국 강남 및 요동지역(Chinese Jiangnan & Liaodung regions), 물자징발(Exploitation of goods), 원보초 가치추락[Value crash of Yuan Empire's paper currency(Yuan-bo'cho)], 확과첩목아(Kokotemur), 기황후(Dowager Queen Gi), 명 왕조(Ming Dynasty)